논문발췌집

통남 96-12-44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현안과 쟁점

199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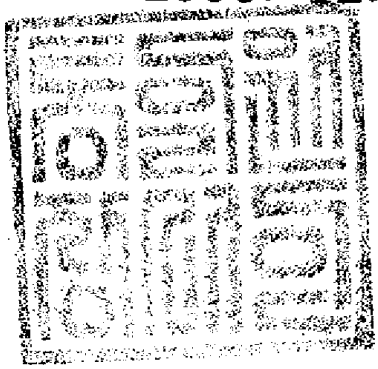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 본 논문발췌집은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하여 각종 세미나와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었거나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위촉한 논문 108편의 주요 내용 중에서 각 세부분야별 정책대안을 중심으로하여 개조식으로 발췌한 것임.

○ 본 논문발췌집에 수록된 내용은 통일원(남북회담사무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힘.

목 차

Ⅰ. 개 요 ····· 5

Ⅱ. 기본방향 ····· 11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 ····· 13
가. 논의의 전제 ····· 13
나. 목표 ····· 20
다. 정책추진방향 ····· 25
라. 접근방안 ····· 31

2.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방안 ····· 38
가. 정전협정의 수정·증보방안 ····· 38
나. 민족공동체헌장(또는 남북연합헌장)채택 ····· 41
다.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 ····· 42
라.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방법 ····· 47

3.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기본원칙 ····· 54
가.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 54
나. 주변국 협조원칙(국제적 보장방안) ····· 59
다. 남북간 합의 존중원칙 ····· 75

Ⅲ. 북한의 의도 ····· 79

1. 미·북 평화협정 주장 의도 분석 ····· 81
2. 정전체제 무실화 의도 분석 ····· 92

Ⅳ. 정전체제 관리문제 ……97

1. 현 정전체제의 문제점 ……99
가. 전쟁억지 및 위기관리체제로서의 정전협정체제 평가 ……99
나. 정전협정체제의 문제점 및 전망 ……100

2. 정전협정 무력화에 대한 대응책 ……107

3. 잠정협정 및 중간(우회)조치 문제 ……123
가. 북한의 잠정협정 제의 분석 ……123
나. 대응방향 ……125

Ⅴ.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29

1. 4자회담 제의 배경 ……131

2. 북한 및 주변국의 예상태도 ……136

가. 북 한 ……136
나. 미 국 ……144
다. 중 국 ……147
라. 러시아 ……153
마. 일 본 ……156

3. 4자회담 성사를 위한 전략 ……160

4. 4자회담 운영방안 ……166
가. 회담형식 및 운영전략 ……166
나. 의제 ……174
다. 기본합의서와의 연계 ……178
라. 4자회담과 남북대화 ……179

Ⅵ.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관련 쟁점사항 ·····181

1. 평화협정 체결 형식 ·····183

2. 평화협정 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85

3. 평화 보장 및 관리기구 문제 ·····196

4. 유엔사 해체문제 ·····200

5. 주한미군 문제 ·····207

6. 불가침경계선 문제 ·····210

※ 수록논문명 ·····214

Ⅰ. 개 요

Ⅰ. 개요

○ '94.4.28 북한의 새로운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 발표된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가 남북간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95.8.15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원칙이 제시된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 전환의 적실성·현실성에 대한 논의와 어떠한 방식의 국제적 보장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 북한의 정전체제 무실화 책동의 강도가 높아감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 이전의 정전체제 관리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으며,

- '96.4.16 한·미 정상의 4자회담 제의 이후에는 4자회담의 성사 가능성과 4자회담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

-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본방향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방안의 문제가 아닌 실천의 문제임을 전제로하여 법리 및 현실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음.

- 평화체제 전환방안으로는 기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하는 방법과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법 등 두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었으나, 4자회담 이후 평화협정 체결론이 당연시 되고 있음.

- 평화체제 전환의 기본원칙으로 '95. 8.15경축사의 3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당사자 원칙을 융통성있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상당수 있었음.

북한의 의도

○ 북한의 미·북 평화협정 주장 의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대남 적화의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전통적인 시각 외에, 협정 자체보다는 대외적 위기국면 타개의 복합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음.

정전체제 관리문제

○ 한반도의 정전체제에 대해서 전쟁억지 기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평가하지만, 북한의 계속적인 무실화 조치로 인해 위기관리 체제로서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유엔을 통한 압력, 군정위의 군사공동위로의 대체, 한·미공조를 통한 북한의 대미 직접 군사접촉 저지, 의연한 입장 견지 등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음.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 한·미 정상의 4자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긴장조성에 대응한 적극적 대응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음.

○ 4자회담에 대해 북한은 응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상태로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는 거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나

- 북한이 결국 4자회담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제의나 전제조건 제시 등을 통해 거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4자회담 성사의 또 하나의 관건인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4자회담 개최 자체에 대해서는 내심 찬성할 것이나

- 북한이 참여의사를 밝히기 전에 공식지지 입장을 밝히거나, 북한을 설득하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 많았음.

○ 4자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회담의 조기실현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미국의 때 이른 대북 유화책에 제동을 거는 한편

- 4자회담에 응함으로써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시하고는 등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음.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관련 쟁점사항

○ 평화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합의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는 주문이 상당히 있었고, 배상과 책임자 처벌 문제를 포함하는 전통적인 평화협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 유엔사 해체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가진 주장들이 많았으나, 유엔사의 군사적 의미가 미미하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계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측이 충분한 재량과 여유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음.

○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논문들이 정전협정과 주한미군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절대 4자회담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고,

- 북한측의 최근 언동으로 판단할 때 주한미군 주둔을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점차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Ⅱ. 기본방향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

가. 논의의 전제

○ 남북이 남북한관계의 법적 정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조국통일의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한갓 형식적·명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음.

- 그러나 남북한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법적 정리를 하는 것은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논리적·이상적인 것이나,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논리적·이상적인 것은 아님.

- 왜냐하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을 주기때문임. <김명기(명지대 법학과 교수),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문제」 44쪽 (『북한』 '89.7)>

○ 어떠한 휴전협정 대체 논의에 있어서도 문제의 핵심은 실질적 평화의 구축여부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됨.

-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휴전협정을 폐기 또는 대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도착임.

- 실질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또는 그러한 체제의 구축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면 휴전협정은 사실상 저절로 용도폐기될 것임.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휴전협정체제의 대체에 관한 소고」 57쪽 (『통일문제 연구』 3권 4호 '91.12)>

□ 대책구상시 유의사항

○ 미-북간 협상과정에 대한 아측의 개입 역량상의 취약성

- 동 사안과 관련한 사태의 진전과정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향력 밖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 우리가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한-미관계를 경유하는 간접적인 경로와 북한이 반응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가지는 몇 가지 경제적인 이득제공 능력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임.

○ 상황의 질적 변화에 부응하는 신속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 또 하나, 동 사안과 관련하여 사태를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유념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는 전략환경의 급속하고도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우리 자신의 관점과 인식을 즉응적으로 적응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임.

-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우리에게 향후 당면할 전혀 다른 전략환경의 시발적 양상으로서 현재를 보는 기본적인 상황인식에 있어서의 거시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됨.

○ 아국의 궁극적인 정책목표에 대한 철저하고 명확한 규명의 중요성

-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상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명확한 규명작업일 것임.

- 변화하는 상황이 제기하는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임기응변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우리 자신의 뚜렷

한 목표를 전제로 거시적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지킬 것은 어떠한 상황적 압박하에서라도 지켜가는 목표지향적인 정책추진 형태가 특히 현재와 같은 과도기적 상황하에서 더욱 더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임. <이규열(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및 유엔사 문제」『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33-35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9.30)>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은 "평화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지 휴전체제를 여하히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것인지의 "방안"의 문제는 아님.

-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는 한 북한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적절한 평화체제 전환방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그동안의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지나치게 휴전협정 대체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마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만 하면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음.

-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에서 문건주의식(또는 형식주의적) 접근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은 과거의 예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음.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현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문제」『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50-51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10.7)>

○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

- 협정당사자의 준수

- 협정당사자가 협정을 위반할시 위반에 따른 더 큰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강제적 수단 보유

- 효과적인 감시기구 <백승주(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베트남 평화협정과 월남공산화 과정의 연계성 분석」 31쪽(국방연구원 안보정세 평가회의 자료 '94.7.28)>

○ 우리내부의 자기합리화를 위한 논리개발이 아니라 국제사회(미국 등 서방과 중·소)를 설득하고 북한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대안개발이 필요

-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북한의 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수단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음.

- 만약 그러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회전략을 구사해야 함.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의 5·3성명 관련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 주장에 대한 대처방안」 7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5.5)>

○ 본질적으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평화구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기본적으로 방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문제로서, 진

정한 평화공존의 의지가 있을 때에만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하겠음.

- 그러므로 남북한간에 진정한 평화공존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임.

○ 또한 남북한이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제성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 전략 : 내용, 의도 및 문제점」『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77-78쪽(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95.6.21)>

○ 정전협정체제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협정 체결, 국제적 보장방안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다단계적인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임. <박영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모색」 56쪽(『통일』 '95.9)>

○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현행 "정전협정"을 폐기함으로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민족적 기본과제인 "평화"와 "통일"의 양 관점에서 보아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인지를 먼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함.

- 이러한 기본 입장의 자주적인 정리 없이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의에 대한 어떠한 외교·안보·통일정책도 수립될 수 없고, 설혹 그것을 수립한다 해도 그것은 가상이 될 수밖에 없음. <김명기(명지대 교수), 「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협정의 체결」 90쪽(『한반도 군비통제』 '95.10)>

○ 평화상태의 구축에 있어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나 협정체결보다는 평화상태 구축을 위한 정치지도자와 자국국민의 강력한 의지와 열망이 중요함.

- 이집트와 이스라엘 평화협정 사례를 볼 때 전쟁종결과 평화상태 구축을 향한 정상간의 강한 열망과 평화를 위한 합의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합의는 물론 그 이행도 가능했음.

○ 평화는 협정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 즉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

○ 평화는 단기적,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증진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천 가능한 단순한 내용의 합의와 이행이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음.

-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의 경우나 중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의 관계정상화의 경우에서도 각각 6-7년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평화와 관계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음.

○ 평화를 위한 합의는 적대쌍방 당사자간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 쌍방간 긴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국간의 이해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증진될 수 있음. <문성묵(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중령, 정치학 박사), 「평화협정개념과 주요사례 연구」, 148-149쪽(『한반도 군비통제』, '95.10)>

○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우리가 입장에 어느정도 유연성을 보인다거나 양보한다거나 해서 해결될 성질의 문제는 아님.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근본적인 걸림돌은 북한체제 그 자체이며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방안은 결국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는 방안과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하겠음.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96-2』 8쪽(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96.4.12)>

○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적(특히 국제법상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책선택의 문제(또는 남북한의 정책대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문제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고찰되어야 할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입장(특히 전략적 측면)과 남북한관계 현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정책대안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이라 하겠음. <제성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문제점」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 88쪽(민족통일연구원·충남대 국내학술대회 '96.9.13)>

○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 첫째, 현재의 분단상태를 인정하고 향후에도 이를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남북한의 의지가 분명하고 확고해야 함.
- 둘째, 상호교류와 상시적인 접촉통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야 함.

- 셋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주변국들과의 공동안보체제와 연계시켜서 전쟁의지를 미연에 봉쇄할 수 있어야 함.

- 넷째, 평화체제가 소극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경제협력과 같은 적극적인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평화체제를 통해 더 많은 이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류길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 이론적 검토와 현실적 대응」 11-12쪽(고려대 평화연구소 세미나 '96.11.28)>

나. 목표

○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전단계에서 남북관계를 간접화 방식의 현 정전협정체제를 직접화 형식으로 조정 또는 대체할 필요가 있음. 현 정전협정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는 두 가지 요건을 필요조건으로 할 것임.

- 첫째는 전쟁억지 면에서 현 체제보다도 결코 약화되지 않은, 오히려 강화된 체제라야 함.

- 둘째는 남북관계를 직접화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황원탁(전 군정위 수석대표),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전협정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35쪽(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3.6)>

○ 남북한간의 진정한 '평화체제'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남북한간에 군사력 균형을 통한 효과적인 억지상태가 이루어져야 함. 여기서 군사력이라 함은 재래전력과 함께 핵능력 부분에서도 적용되며, 특히 핵능력의 경우 쌍방의 동시보유나 동시포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의 NCND 정책에 대해서는 유용한 핵억지의 수단이 한국측에 존재해야 함. 군사력 균형은 남북한 쌍방에게 공히 상대방의 군사능력이 지니는 현재적·잠재적 위협을 현저히 감소시켜줄 것이며, 일방의 적대의도를 사전봉쇄하는 효과를 낳을 것임.

- 둘째, 쌍방간의 적대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공세적인 군사력 배치나 운용이 적절히 제한되어야 함. 전쟁은 단순한 군사력의 숫적 놀음으로만 조절될 수 있는 것은 아님. 즉,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군사력을 양성하였는가에 따라 전투역량은 판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균형된 군사력하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우발적인 분쟁과정에서 일어난 오해나 불신이 대규모의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한 적절한 분쟁조정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현단계에서 남북한에게 중요한 것은 통일이라는 막연한 목표에 집착하기 보다는 오랜 불신의 벽을 허물고, 쌍방에 대한 군사적 우려를 감소시키는 일임.

- 즉,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한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하고, 군사적인 침공에 의하여 상대방을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작업을 무엇보다도 먼저 시작하여야 하며, 이는 평화체제의 성립과 직결되는 것임.

- 이와 같은 평화체제의 유지는 그 궁극적인 형태가 흡수통일이

건 합의통일이건 간에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즉, 평화체제는 남북한 통일의 시간을 다소 연장시킬지는 모르나 보다 안전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것임. <차영구(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남북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군사적 방안」「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 3-5쪽(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3회 통일문제 학술시민포럼 '94.11.18)>

o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반도 평화공존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 첫째, 남북한이 상호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 둘째, 한반도 비핵화가 보장되며,

- 셋째,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고,

- 넷째, 다방면에 걸쳐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며,

- 다섯째, 남북간의 여하한 분쟁에 대해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력사용 또는 사용위협을 배제하고 이를 밑받침하기 위하여 군비통제가 이루어지며,

- 여섯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상호 관심사의 협의를 위한 기구 및 절차가 마련되고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 이러한 평화공존을 밑받침하고 보장하는 남북간에 명시적 및

묵시적으로 합의된 제도와 절차를 총칭하여 평화체제라 부를 수 있음. 그러므로 평화체제는 사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 남북간에 평화공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북한당국에 의해 취해져야 함.

- 한반도 공산화 통일 목표의 공식적 포기 선언

- 남북한 평화공존에 부합하는 북한 헌법 및 노동당규약 수정

- 미·북합의의 완전한 이행

- 이산가족의 서신교환 및 상봉조치, 납북민간인의 송환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 부대 재전개를 포함한 군비통제 협의 및 이행 <오관치(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미·북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 2-3쪽(민주평통 토론회 '95.4.11)>

○ 우리의 목적은 안보(평화), 협력(대화 및 교류), 통일(화해)이며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될 때까지 한·미동맹을 한반도통일과 동북아 안정을 위한 지역동맹으로 결속하며 중국이 이것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국가전략을 정립해가야 할 것임.

- 4자회담과 남북회담은 이러한 목적과 전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임. <안병준(연세대 교수), 「'4자회담' 예상쟁점과 대응방향」 1쪽(외교안보연구원 한반도 4자회담의 과제와 접근방향 세미나 '96.5.8)>

○ 만약 우리가 새로운 평화체제의 합의라는 최종 목표 지점에 강조점을 두고 4자회담을 본다면 그것만큼 불투명하고 요원한 것도 없을 것임.

- 그러나 4자회담의 진정한 의미는 그 최종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해 당사국들이 서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분단체제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보임.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4자회담과 향후 남북 관계」 9-10쪽(『통일경제』 '96.5)>

○ 한반도에서 전쟁이 중지되어 있는 현재의 정전상태를 유지하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 남북한이 불신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국가의 안보이익을 인정하고 공존공영을 추구할 뿐 아니라

-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남북한이 국가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함임.

- 나아가서 남북한이 변화하는 동북아와 세계질서 속에서 협력함으로써 한민족의 "민족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함임. <류길재,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 이론적 검토와 현실적 대응」 12, 20쪽>

○ 한국정부가 바라는 평화체제구축 구상은 단순한 전쟁억지나

양체제간의 단순한 협약이나 조약 등 소극적인 현상유지책에서 벗어나

- 실질적으로 평화를 창출하고 정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항구적이며 현실적인 평화체제 구축방안이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제도화되고 실천되도록 하자는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삼고 있음. <최영관(전남대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 4자회담을 중심으로」『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109쪽(전남대·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96.11.29)>

다. 정책추진방향

○ 이제부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보다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먼저 결속하고 북한이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 주어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임.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기 때문임. <안병준(연세대 교수), 「'남북기본합의서' 후의 남북한관계와 평화체제」 70쪽 (『통일문제연구』 4권 1호 '92.3)>

○ 남북한의 자주적인 통일을 전제로 한 "정전협정"체제의 변화는 시기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변화는 먼저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함. 즉 북한의 위협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통제가능할 때를 기다려 시행에 옮겨야 할 것임. <황원탁,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전협정 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41쪽>

○ 현재의 휴전체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한 현 휴전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전시도 아니고, 평시도 아닌 중간적인 법상태로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통일, 외교정책 수립에 많은 융통성을 줄 수 있을 것임.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 방안」 26쪽(『통일』 '94.3)>

○ 우월적 군사력에 의하여서만 궁극적 평화보장

-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본질적 수단은 국제법에 의거한 협정이 아니라 군사력임.

- 평화협정을 지킬 힘이 없으면, 궁극적으로 안전을 지킬 수도 없을 것임.

○ 군사적 불균형 심화 절대 불용

- 군사적 불균형이 심한 현실을 제도화하는 협정은 안보를 위험하게 하는 것임.

- 적대하고 있는 정치세력간의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협정은 약한 세력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

○ 실질적 협정참여권 확보

- 실질적 협상참여 없는 협정에 아국 안보문제가 거론, 구속되어서는 안될 것임.

○ 평화협정을 지킬 수 있는 강제장치 보장

- 감시기구의 효과적 운영

- 위반에 대한 물리적 제재수단의 확보, 과시

○ 평화협정 체결이전 보다 체결이후 중요

- 평화협정 이전보다 체결이후 정세전개과정, 특히 군사적 대비가 중요

○ 국제정치는 현실주의가 지배

- 베트남 평화협정에 갈채를 보냈던 세계여론이 평화협정과 월남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음. <백승주, 「베트남 평화협정과 월남공산화 과정의 연계성 분석」 37쪽>

○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무기는 북한이 현재 대서방 관계개선을 통해서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 악화된 경제형편상 이러한 시도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실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임.

- 즉, 이점에 착안하여 북한의 정전위 무력화 조치와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북한의 대서방 관계개선만을 지체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북한에 주지시키는 전략구사가 필요함.

○ 북한의 조치에 대한 과민 혹은 예민한 반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

- 한·미공조의 지속적인 확인작업 속에서 필요에 따라 북한

의 행동을 무시하는 태도도 필요함.

○ 미국으로 하여금 남북한의 협의없는 어떤 형태의 정전체제의 재편도 반대하며 북·미 평화협정은 불가하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종석, 「북한의 5·3성명 관련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 주장에 대한 대처방안」 7-8쪽>

○ 아직도 무엇하나 제대로 풀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평화의 문제들을 다루는데는 각론적 세부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총론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군사력의 차분하고 내실있는 보강과 세련되고 유연한 외교적 노력이 합쳐져 있을 때 국가안보는 가장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음. <윤진표(성신여대 교수),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에 따른 군사분계선 관리 및 대응방안」 19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5.5)>

○ 한반도에서 전쟁이 중지되어 있는 정전상태를 유지하는 소극적 평화보다는 남북한이 불신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국가의 안보이익을 인정하고 공존공영을 추구할 뿐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적극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작업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고 부를 수 있음.

○ 남북한간에는 상호 불신의 골이 너무 크고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으므로 어느 한 순간에 법적으로 완벽한 체제의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평화체제가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 평화체제 수립에 필수적인 몇가지의 조치를 합의하기 쉽고 이행하기 쉬운 것과 합의하기 어렵고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조치로 나누어 단계별 실천을 보장해 나가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

o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대남 협상의지를 타진하여

- 북한이 한국과 일거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면, 한국전쟁 청산·종료, 위기관리, 군비통제, 협력, 평화통일원칙에 관한 일괄타결을 시도함.

-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 요구 자체는 포기하였으나 중간조치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한국과도 평화체제에 관한 타협 의사를 보일 경우에는 정전체제의 일부 유효조항을 지키면서 위기관리 체제의 수립, 군비통제 조치의 합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협력 단계에서 지금까지의 평화구축 노력을 완결짓는 형태로 평화협정을 체결함.

- 북한이 계속 한국을 배제시키면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다면, 과감한 국방비 투자를 통해서 대북 군비경쟁과 체제경쟁을 지속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등 주변국과 군사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더욱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임. <한용섭(국방대학원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96-97, 99, 114-115쪽(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95.6.21)>

o 미국의 의도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의혹은 자제되어야 함. 이는 자칫하면 한·미간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 궁극적으로 자기완성적 예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야 함.

- 확고한 한·미관계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의 걸림돌이 아니라 촉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임.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남북한 평화체제 전환대책」『1995년도 군비통제세미나』 56쪽(제5회 군비통제 세미나 '95.8)>

o 이러한 국제상황에서 우리는 남북문제에서 정전협정의 유효성이나 당사자원칙이나 당국간의 대화만 경직되게 고집하는 추상적 명분논리보다는 좀 더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음.

- 그 예로 남북대화에서도 경직된 상호주의를 지양하고 유연한 상호주의로 대화 전략을 바꿀 수도 있고,

- 소극적 기능주의보다는 적극적 신기능주의로 비논리적 문제해결의 돌파구인 정상회담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21쪽(국제문제조사연구소 '95연례정책토론회 '95.11.21)>

o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은 제반 대북정책이 결코 김정일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가운데,

- 북한 내부에 평화공존을 선호하고 실용주의적인 새로운 지도체제가 등장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촉진시키는 것임. <남만권(국방연구원 군축전략연구실장),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의 접근방안」 12쪽(『주간국방논단』 611호 '95.12.4)>

○ 협상주체로서의 자주성을 회복해야 함.

- 협상주체로서의 자주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은 여전히 "한·미공조체제"의 한 일원일 뿐이고 협상테이블의 한 켠으로 밀려나 있을 수밖에 없음.

-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한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임.

○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함.

- 원칙의 고수와 법리적 해석의 필요성을 아무리 인정한다 해도, 이제는 형식과 명분보다는 실리에 바탕을 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북한과 미국의 정책은 이미 실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은 북한의 "평화적 생존전략"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실용주의적 접근을 서둘러야 함. <이철기(동국대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의 필요성」『통일전략포럼 보고서 96-2』 20-21쪽(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96.4.12)>

라. 접근방안

○ 통일이나 평화체제의 구축은 협정이나 조약의 체결로 한꺼번에 달성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 파악되어야 함.

- 이러한 단계적 시각에서 볼 때, 휴전협정의 대체는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종결 또는 분명히 확인된 평화구축의지에 대한 문서상의 추인에 해당되어야 함. <백진현, 「휴전협정체제의 대체에 관한 소고」 75쪽>

○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남북한의 합의를 근거로 평화체제 수립과정의 한 단계로 다루어져야 마땅함.

- 평화협정의 정의가 전쟁의 원인이 소멸한 상태에서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평화협정은 신뢰구축·군축이 이행된 후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위협평가시 설정한 증거기간의 말기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평화체제 전환의 제 단계를 완결지을 수 있을 것임. <이석수(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한반도 평화체제의 연계구조 : 갈등관리의 다차원적 분석」『통일조국의 미래상』 50쪽(충북대 '94 통일문제 학술회의 '94.6.8)>

○ 남북한 평화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① 정전위 계속 가동하며 외교적 압력

② 군비통제 추진 : 先신뢰 後군축

- 북한은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군축을 동시에 연계해서 추진, 따라서 우리는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군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구축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③ 군비통제 진행중 군사공동위와 군사정전위 병행가동

- 초기 : 군정위 기능 강조, 군사공동위와 업무 분담

- 후기 : 군사공동위 활발히 진행되면 군정위 기능 약화 예상. 이 경우 비무장지대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문제, 분쟁 발생시 처리문제를 군정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군정위를 일종위 국제적 보장장치로 활용

④ 상호 신뢰회복 및 군축단계가 진전되면 남북간 평화체제 전환

- 군정위 기능을 분쟁시 국제적 보장장치로 활용하는 가운데 남북한 기본합의서 틀내에서 평화협정 체결 <박주현(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미·북간 평화체제 전환 논의와 관련한 군정위 위상변화 전망」『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108-109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8.23)>

o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성을 위한 노력은 ① 남북한 UN 동시가입, 기본합의서 체결,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을 포괄하는 준비단계로서의 조치, ②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구조적·운용적 군비통제협상, 상호간의 충분한 조기경보 시간 확보 등의 군사적 신뢰정착 조치, ③ 평화협정 체결, 군사대화 채널의 정례화 등의 제도화 조치, ④ 주변 4강에 의한 남북한 승인, 동북아 지역평화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연계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 보장조치 등의 4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음.

- 이중 첫번째인 준비단계로서의 조치는 이미 실현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여타 범주의 조치들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 및 제반여건에 따라 추진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을 것임. <차영구,「남북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군사적 방안」 8쪽>

□ 평화협정의 전제조건 또는 단계별 평화체제 접근방법

① 남북한 우발적 군사충돌이 대규모 충돌로 확대되는 것 방지

② 분단관리 기구의 발족(군사정전위 대체)

-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 또는 남북한·미국·중국 4자 평화관리기구

③ 남북 불가침 선언 이행위한 보장조치의 합의 및 실행

- 신뢰구축조치(남북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군사훈련 상호통보 및 통제, 군사정보 상호교환 및 확인 방문)

- 휴전선 일대 병력배치 제한지역의 설정 및 조기감시 경보체제 구축

- 북한의 기습공격 전략 및 적화통일 전략의 포기(노동당 규약의 개정)

- 북한의 과다병력과 남한 병력의 상호 낮은 수준으로의 감축

- 대량살상무기의 감축 및 해체

- 한반도 비핵화 실현

④ 주한 미군의 철수시에도 소규모 병력 잔류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4강의 양해사항,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발족)

⑤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장기적 계획 작성위한 협의 착수(한·

미·일 삼국간 협의) <한용섭(국방대학원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 2쪽(통일정책실 세미나 '94.11.24)>

○ 「선 평화체제 기반 조성, 후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선 평화협정 체결, 후 평화체제 구축」정책을 추진함.

- 이와 함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규정하고 있는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의 단계별 통일기도를 견지하되, 각 단계별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에 효율적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다음과 같은 3단계 접근기도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함.

- 1단계(정전체제 유지)에서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기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함. 군사정전위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

- 2단계(불가침 부속합의서 실천)에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함. 이와 함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미·북 불가침협정과 한·중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는 등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함.

- 3단계(남북 평화협정 체결)에서는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 이를 위해 당사자 자격을 확인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함. 이와 함께 남북 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방안을 강구·추진함.

- 단계별 발전구도를 선행단계가 완료된 후 다음 단계로 이행해 가는 경직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함.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09-111쪽(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5.9)>

○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함.

- 현 시점에서 단계론과 접진론은 큰 설득력과 실효성이 없어 보임.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 즉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문제를 비롯해 북·미 관계개선 및 교차승인 문제,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군축 및 비핵화 등은 독립된 별개의 문제들이라기 보다 서로 연관된 문제들이므로 포괄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얽혀 있는 문제들을 풀기가 쉽지 않음. <이철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의 필요성」 21쪽>

○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방법은 통일정책과 연계시켜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함.

- 다시 말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규정하는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이라는 단계적 구도와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이상의 원칙에 따른 단계적 추진방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데, 그 단계는 첫째, 정전체제 유지 원칙임.

-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체제의 성실한 이행과 준수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전체제를 파괴하고 위반하는 토대에서는 불가능한 것임.

○ 둘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원칙임.

- 남북은 기본합의서와 불가침선언의 부속합의서에 군사공동위를 개최하여 남북간 군비통제를 합의,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남북간에 먼저 군비통제 협상을 제의하여 평화체제와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도 있음.

○ 셋째, 이러한 원칙 아래서 최종단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간에 새로운 평화체제 추구를 이루는 것임.

- 제1,2 추진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됨으로써 남북간에 실질적인 평화적 신뢰와 교류·협력관계가 가시화되었다고 판단될 때

-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4자회담의 틀을 이용하여 미·중의 역할이 강조되는 국제적 보장노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최영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 4자회담을 중심으로」 116-117쪽>

2.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방안

가. 정전협정의 수정·증보방안

○ 평화협정이 남북한의 평화를 진정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어느 일방의 무력통일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는 현재의 휴전협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 못한 것임.

- 특히 평화협정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적화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 북한의 책략이라면 우리는 차라리 현행 휴전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임. <김명기,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문제」 48-49쪽>

○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조금 보완해 대체하는 방안은 우선 정전협정에 남한이 서명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등 정전협정 당사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임.

- 그런데 휴전협정의 61항에 수정 및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의 상호합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 이것은 현실적으로 간단한 일이 아님.

- 더구나 이 방안은 어디까지나 현행 정전협정체제 유지라는 전제하에 평화체제 유도를 위한 과도방안에 불과함. <이장희,「휴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 방안」 29쪽>

○ 현행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여 "휴전협정"을 폐지하는 것이 남북한 관계의 복잡한 국제법적 정리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오히려 현행 "휴

전협정"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휴전협정"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음. <김명기(명지대 교수), 『한반도평화조약의 체결 -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92쪽(국제법출판사 '94.4.1)>

○ 휴전협정으로 1950년 한국전쟁은 종료하였음. 또한 전쟁의 재발이나 무력충돌을 막기 위하여는 휴전협정만큼 잘된 법적 장치는 다시 마련하기 힘듬.

- 더구나 전쟁의 원인인 한국의 분단을 해결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음. 이러한 형식적 협정이나 불가침선언 등을 아무리 반복하여도 무력충돌 방지를 위하여 현재의 휴전협정보다 나은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음.

- 관계가 정상화되어도 휴전협정은 무력충돌의 방지를 위하여 통일이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유병화(고려대 교수), 「북한의 '평화보장체계' 수립 주장에 대한 분석·평가 및 향후 대처방향」 『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47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5)>

○ 현 시점에서 정전협정으로 인해 남북한 관계개선이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갑자기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도 아닌터에 지금까지 불안하기는 하나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해온 정전협정체제를 다른 체제로 전환시킬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임.

- 우리는 정전협정체제에 의해 한반도 평화유지에 유엔이 관여하도록 제도화시켜 놓고 있으며, 남북한이 모두 유엔회원국이 된 지금 유엔이 관여하는 정전협정체제의 평화유지기능은 더

욱 강화되었고 또 더욱 바람직스러운 것이 되었다고 보아야 함.

○ 일반적으로 평화조약(보다 정확히는 강화조약이라고 부름)은 전쟁이나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전국간에 체결함.

- 여기에는 통상 적대행동의 종료, 포로인도, 영토할양 또는 국경선 조정, 주민의 국적변경, 배상금 지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대부분이 군사정전협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정전협정에 비무장지대의 설치 등 평화유지조치도 포함되어 있으며, 본 협정에 의해 사실상 평화상태가 지속되어 온 까닭에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새로이 평화협정을 구태여 체결할 필요가 없는 것임. <오관치, 「미·북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 9, 21쪽>

○ 정전협정 제62항을 근거로 한 정전협정의 수정·증보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미 정전협정이 상당부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북한의 정전협정 사문화 전략에 비추어 정전협정을 약간 보완함으로써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남북한 관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성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한국의 정전체제 유지와 평화체제 구축방안』 58쪽 (국방군사연구소 군사사 세미나 '95.10.10)>

나. 민족공동체헌장(또는 남북연합헌장) 채택

○ 민족공동체헌장은 남북한간의 기본관계를 설정하고, 남북연합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이렇게 설치된 남북연합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과도단계로, 남북간의 제반 현안을 협의, 해결해나가게 되는데 휴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도 이 중의 하나임.

○ 평화공존과 통일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시에 그러한 평화체제를 발판으로, 공존하는 두 체제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임.

- 이러한 체제수렴 노력의 출발점이 바로 휴전협정의 남북연합협정으로의 대체임. <백진현, 「휴전협정체제의 대체에 관한 소고」 77-78쪽>

○ 현재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조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평화협정 못지 않은 효과를 발휘할 것임. 또한 기본합의서가 평화체제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아닐 것임.

-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후에 채택되는 남북 정상간의 공동성명이나 남북연합헌장과 같은 새로운 합의서의 채택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 <김덕중(관동대 교수, 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연계전략으로서의 '평화협정' 제기와 대응책」『미·북관계 속의 「평화협정」제기, 그 대처방안』 67쪽(민주평통 전문가 정책포럼 '95.5.15)>

○ 우리의 통일방안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족공동체헌장

내지 남북연합헌장을 채택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음.

- 남북간 정치관계 규정과 함께 평화협정으로의 핵심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임.

-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통일방안을 흡수통일방안으로 규정하는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음. <제성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 57-58쪽>

다.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

○ 기본합의서가 각 조문이 목적한 대로 잘 이행된다면 그것이 곧 현존하는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임.

- 남북이 기본합의서 제5조의 약속을 착실히 실천해 간다면 그 결과는 곧 전쟁의 유산을 청산하고 정치적 화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평화협정 또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북의 군사당국간에 직접적인 협상과 교류가 진전되면 될 수록 남북군사분과위원회와 군사공동위원회가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을 점차로 대체해 갈 것으로 예상됨. <안병준, 「'남북기본합의서' 후의 남북한관계와 평화체제」 61-63쪽>

○ 만일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발전으로 휴전협정을 대신하

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하였다면, 미·북 평화협상에 대하여 우리가 굳이 민감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임.

- 다만 휴전협정 당사자론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과 함께 정전협정 종식에 따를 조치들 - 예컨대 군정위 기구들의 기능을 인수하는 문제, UNC의 새로운 역할문제, 참전국들과의 외교적 문제 등 - 을 강구하면서 남북군사공동위 등 기본합의서에 합의된 분쟁해결 기구들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이영호(전 남북군사분과위 위원), 「4.28 북한 외교부성명에 대한 분석·평가와 향후 대처방향」『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86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5)>

○ 문제는 쌍방 정상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음. 그 정치적 결단이란 쌍방 정상이 정전협정체제상의 휴전선을 남북기본합의서체제상의 불가침선으로 전환, 관리하겠다는 결단임.

- 그리고 여기서 『남북평화공동선언』은 영토문제, 전범처벌, 전후배상문제를 규정하는 전형적인 평화조약의 내용이 아니고 '기본관계를 정상화하는 평화조약'이 되어야 할 것임.

- 이 방안은 남북합의서 전문이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로 가기 위한 특수관계'임을 명문화했음을 볼 때,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분단을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한국 정전협정의 평화체제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 19-20쪽(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제13회 통일문제 학술시민포럼 '94.11.8)>

○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이미 합의된 기본합의서를

근간으로 하여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음.

- 이 방안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남북한이 기합의한 기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
  ·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남북한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사실상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들, 예컨대 전쟁의 원인 제거 및 전쟁책임 규명문제(전범처벌 포함), 배상·보상문제 등의 논의를 우회할 수 있음.
  ·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을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경계선으로, 또한 군사정전위원회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로 대체할 경우 자연스럽게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이룩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입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기본합의서 제5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동 합의서의 이행·실천만으로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함. 따라서 남북한이 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본합의서 제5조를 사문화 시키고 휴전협정의 종료 또는 전쟁상태의 종결과 평화상태로의 회복을 선언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 수정과정 또는 별도의 부속합의서 채택과정이 필요함.
  ·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점진적·단계적으로 기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하는 방법은 현실성을 결여한 경직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기본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과 국제법적 효력이 모호한 상태인 바, 이를 근거로 평화체제 전환을 모색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음. 특히 남북한이 이 방식에 동의한다고 하여도 국제사회가 기본합의서의 국제적 효력을 인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98-100쪽>

○ 남북한이 민족 앞에서 엄숙히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하는 원칙 위에서 평화체제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민족사적 요구에도 부합됨.

- 최근 북한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면」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시사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실천을 전제로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점진적으로 평화체제 전환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제성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 58쪽>

○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최선의 접근방식을 제도화한 규정이므로 문제는 별도의 합의가 아니고 실천임.

- 진정한 평화체제가 구축된 연후에 남북간 평화협정을 맺든가 또는 정전협정을 기본합의서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을 것임. <남만권,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의 접근방안」 8쪽>

○ 새로이 남북한간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보다는 기존의 훌륭한 평화체제의 틀을 여하히 이행해 나갈 것인가를 협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됨.

- 이 경우, 남북합의서상의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필요한 구체적 절차 등은 추후 보완해나가면 되는 것임.

- 그러나 굳이 '평화'라는 말에 애착을 가진다면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를 화해·협력의 법적 기초로 보고 이 문서에 근거하여 이것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부속문서로서 가칭 「한반도 평화 공동선언」이나 「남북평화선언」을 남북 정상이 채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김경수(국방연구원 전략무기체제 연구실장),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 16쪽(『주간국방논단』 614호 '95.12.26)>

○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 실천은 남북한간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여건 내지 기반이 될 수 있을 뿐이며, 현재의 남북기본합의서 조항을 그대로 두고서는 평화상태(또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올 수는 없음. <제성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체제 전환문제」 153쪽(『북한』 '96.3)>

○ 미국과 남한이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 사이의 문제이며, 남북한이 쌍무조약을 체결하고 1991년 12월에 맺은 남북합의를 존중하면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함.

- 1991년에 맺은 합의가 이행되더라도 미국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협정이 뒤따라야 함. <셀릭 해리슨(Selig Harrison, 카네기재단 연구원), 「미국의 대북정책과 4자회담」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25쪽(전남대·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96.11.29)>

라.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방법

○ 평화협정이란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고, 양국관계를 항구적인 토대에서 완전타결하는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을 목표로 하는 분단국 사이의 잠정적 관계를 규율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조약은 아님.

- '휴전협정→평화협정'의 방식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도식적인 접근으로, 이보다는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상황에서 일단 평화를 구축한다는 특수한 현실에 걸맞는 협정 또는 선언의 채택이 바람직함.

- 특히 한반도의 경우, 현재 전쟁상태는 사실상 대체로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문제의 핵심은 평화체제의 구축임.

- 따라서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실질적 목표의 달성이면 족하고, 조약의 명칭이나 전쟁종료방식의 기술적·법리적 적용에 지나치게 구애될 필요는 없음. <백진현, 「휴전협정체제의 대체에 관한 소고」 76쪽>

○ 국제적 보장을 위한 제재장치가 제도화되지 않은 경우 평화조약은 실효성 있는 평화보장방안이 되지 못함.

- 결국 평화는 협정만으로 달성·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의 실질적 여건이 그에 부합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의지와 능력에 달린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보장조약이 체결될 경우,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평화유지 의지가 확인되고 구체적 보장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전동진(민족통일연구원 연구

위원), 「국제적 평화보장 사례연구」 55-56쪽(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1.12)>

○ 정전협정체제를 전환하는데 있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북한의 종래 주장대로 평화협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의 수교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조건은 "정전협정" 제62항에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라고 기술되어 있음.

-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남북 기본합의서 불가침 조항으로 대체한다"라는 대체 조항에 합의하고 미국이 양해한다면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절차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봄.<황원탁,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전협정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50-51쪽>

○ 새로운 평화협정의 체결은 당사자문제의 논쟁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6.25에 참전한 외국국가들의 개입가능성, 전쟁 종결작업으로서 한국전 책임자 처벌문제, 영토문제, 배상문제 등의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 분명함.

- 독립된 평화협정 체결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쟁의 근본원인 제거란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함. <이장희,「휴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 방안」 29쪽>

□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남북당사자 문제의 정리

- 법적 당사자가 복잡하게 엉크러져 있는 "휴전협정"에 의한 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사자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남북한화"할 수 있음.

○ 적대행위의 재발방지

- 한국 "휴전협정"은 정한 기간이 없으므로 쌍방은 상대방에게 통고할 것을 조건으로 각기 적대행위를 재개하는 것이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므로 새로운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휴전협정"에 의한 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이 요구됨.

○ 휴전협정의 결함보완

- 현 "휴전협정"에는 남북한의 해상경계선과 해상자유수역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감시, 이산가족의 재회 등에 관해 미흡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임. 이런 미흡한 점을 평화조약의 체결로 보완할 수 있음.

- 특히 현 비무장지대내에 "평화구역"을 설정하거나 "평화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해야 함. 왜냐하면 "휴전협정"상 비무장지대의 출입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각측 군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임.

○ 통일기반의 조성

-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은 국제법상 전시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쌍방은 상호 적임. 적과의 사이에 통일을 위한 대화는 진전

을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함.

- 따라서 먼저 적대관계를 해소하여 민족화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조약이 체결되어야 함. <김명기,『한반도평화조약의 체결 -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108-110쪽>

○ 만일 별도로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좀 더 계산해 봐야 함.

- 남북간의 평화협정은 쌍방이 다 같이 상대방을 전쟁당사자로 인정하고 6.25를 사변이 아닌 전쟁으로 인식하며,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전범처리문제 등 김일성에게 전쟁책임을 묻는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이영호,「4.28 북한 외교부성명에 대한 분석·평가와 향후 대처방향」 86쪽>

○ 남북 평화협정의 체결은 이러한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그리고 그로 인한 군사적 균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 이와 같은 여건이 형성될 경우 그 형태가 남북한간의 전혀 새로운 협정이건, 아니면 기존 남북합의서 체제의 연장이건간에 쌍방간의 합의를 이루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즉, 평화협정의 체결은 단순한 법리적 측면에 얽매여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로서 논의되기 보다는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그 실현성과 지속성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고 봄. <차영구,「남북한 평화체

제로의 전환을 위한 군사적 방안」 7쪽>

○ 한국의 평화조약이란 한국전쟁의 원인인 한반도의 분단을 해결하는 것임. 한반도의 분단을 해결하는 가장 원칙적 방법은 한반도의 통일임. 그러나 소극적인 면에서 남북한이 두개의 국가로 완전 정리하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므로 한국의 평화조약이란 한국의 통일이나 두개의 국가로 분리하는데 완전히 합의를 하여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한반도 분단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을 해결하지 않은 평화조약이란 있을 수 없고 다만 관계정상화를 법적 지식의 결여로 그렇게 부를 뿐임.

-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조약이나 한국이 북한 주장에 따라 말하는 평화조약은 모두 법적인 의미의 평화조약이 아니라 단지 관계정상화 정도로 생각하면 타당할 것임.

-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정상화는 이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로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생각함. 이제와서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면 그 내용에 무슨 특별한 것을 규정하겠는가? <유병화(고려대 교수), 「군사분계선에 대체할 남북경계선 설정의 법적 문제와 대책」 5-6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5.9.6)>

○ 휴전협정은 본질상 전쟁의 종료가 아니라 단순히 적대행위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적 성격의 군사적 협정에 불과하므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조치가 필요

함.

○ 평화협정의 체결은 전쟁상태의 종료와 함께 평화상태의 회복을 의미하며, 평화협정 체결이 전쟁을 종료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간주됨.

- 이 방안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남북한이 명시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이고 분명하게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이룩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음.
  · 아무런 조건없이 즉각 평화회담을 개최하여 평화상태를 수립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한국은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데 비해, 북한은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남북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얻기 어려움.
  · 통상 평화협정의 내용으로 제시되는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한다든지, 전범처벌 등 전쟁책임문제와 배상·보상문제 등을 남북한간에 논의하기 어려움.
  · 평화협정은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고 양국관계를 항구적인 토대에서 완전 타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일을 목표로 하는 분단국간의 잠정적 관계를 규율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아님.
  · 남북 평화협정은 현재 남북한간에 가합의된 기본합의서의 존재와 그 이행 및 실천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음.

○ 남북 평화협정 체결방법을 추진하되, 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법

의 장점을 취하고 상기 전통적 평화협정 체결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불안정한 정전협정의 틀 속에서 모색되는 평화분위기는 결국 불안정한 평화일 뿐이라는 점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안정적인 평화협정의 틀 속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모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민족통일연구원,「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94, 100-103쪽>

○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방안의 경우,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만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평화체제 전환방식임.

-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고집하고 있고 남북한이 통상 평화협정의 주요내용을 이루는 전쟁의 원인 규명과 책임문제, 배상·보상문제 등을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의 실현가능성은 낮음. <제성호,「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57쪽>

○ 우리로서는 형식논리에 치우친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상태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인 신뢰구축 방안을 갖고 남북대화 재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남만권,「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의 접근방안」11쪽>

3.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기본원칙

가.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 휴전협정은 엄격히 볼 때 남북한, 참전 16개국 및 중국이 당사자이며 따라서 어떠한 휴전협정의 대체논의도 논의의 주체가 남북한이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사실의 확인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임.

- 우리의 당면과제는 휴전협정 당사자자격 획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이미 휴전협정의 당사자라는 것을 논리 정연하게 대내외적으로 명백히 이해시키는 것임.

- 북한의 한국을 배제한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함. <백진현, 「휴전협정체제의 대체에 관한 소고」 65-66쪽>

○ 북한이 남한을 피할 수 없는 협상대상자로 인식하도록 내부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전일적인 규정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평화협정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전시작전지휘권의 환수를 통해서 북한의 대남위협인식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임.

-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율적인 작전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북한이 남한과 협상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종석, 「북한의 5.3성명 관련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주장에 대한 대처방안」 11쪽>

○ 당사자 원칙을 한반도 평화구축문제는 반드시 남북한 당사자간에만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국의 적절한 역할과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또 한국정부는 관련국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백진현, 「남북한 평화체제 전환대책」 47쪽>

□ 당사자 원칙의 실현에 필요한 환경

○ 북한의 인식 변화 필요

- 식량지원·경협 등 이른바 "햇살론"적 대북정책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까? 의문임.

○ 미국의 대 한국 인식 변화 필요

- 미국이 스스로 한반도문제 해결의 보조적 역할을 맡을 의지가 있어야 함. 한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서 영향을 받는 위치로 역할을 축소할 의지가 있어야 함.

- 클린턴 정부 출범이후 북한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각은 수정되어야 함.(한국과 동등하게 북한을 대우하려는 태도)

○ 한국의 준비

- 일관된 대북정책 유지 필요

- 북한의 거부논리 근거 해소(국군통수권 회복 등)

- 한국이 배제된 미·북평화협정 불인정 입장원칙 천명(강력한 자주국방태세, 미래 교전 대상자임을 강조)

□ 당사자 원칙의 실현방법

○ 미국과의 외교적 공조를 더욱 확보하여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양해받아야 함.

-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국을 통하여 실현하도록 미국을 설득

○ 북한의 대남인식을 고려할 때 당분간 구걸적인 유화정책은 북한의 입장을 강화하므로 북한 스스로 한국과의 협력, 직접대화를 모색할 때까지 기다림. <백승주(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1-2쪽(남북회담사무국 전문가 초청 워크샵 '95.8.18)>

○ 한국의 당사자자격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으로서 이를 시시비비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마땅히 휴전협정의 당사자이며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내외적으로 천명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함.

- 북한 주장의 부당성과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대내외에 설득하기 위해 북한 주장을 반론하는 내용을 세계의 각종 간행물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

- 한반도 정치·군사문제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를 보장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평화보장력도 약화될 수 있음.

-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여타 주변국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배제된 한반도 평화보장에는 반대할 것임.

- 한반도 평화보장에 일본이 배제될 경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본의 경제·외교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65-166쪽>

o 한국전쟁으로 인한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데에는 먼저 '2+2 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 이것은 추후 러시아와 일본을 추가시켜 동북아 다자간 포괄적인 안보협의체로 발전시켜나가는 토대가 되어줄 것임. <이삼성(한림대 정외과 교수),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323쪽(도서출판 당대 '95.11.20)>

o 남북한간의 실체인정을 전제로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장력과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2+4」방식이 유리하지만, 외세개입 가능성의 최소화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2+2」방식을 추진하도록 함. <강원식(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보장문제」 29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12.5)>

물론, 주한미군 문제와 북·미수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등 북한과 미국 쌍방간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도 있다는 점임.

-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과 북·미가 각기 상호 협상상대가 되어야 하는 당사자 문제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의 형식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의 실질적인 내용과 협상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함. <이철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의 필요성」 17, 22쪽>

○ 당사자 원칙은 그동안 지나치게 좁게, 배타적으로 해석되어 온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배타적 의미의 당사자 해결 원칙은 우선 당사자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함.

-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원칙의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결과적으로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시작조차 불가능함.

○ 당사자 원칙은 남북한이 한반도문제의 논의를 주도하되 필요할 경우 주변국의 역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이해되어야 함.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5-6쪽(외교안보연구원 한반도 4자회담의 과제와 접근방향 세미나 '96.5.8)>

○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남북 당사자원칙을 주장해왔음.

- 그런데 여기서 우리측 주장이 부딪치는 어려움은 북한이 설령 남북기본합의서상에 천명된 남북불가침조약을 준수한다고 해도,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볼 때, 정전체제의 중요한 축이 되어온 주한미군과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협약은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임.

- 그러나 우리의 당사자원칙 틀 속에는 이 문제를 고려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임. <이종석, 「4자회담과 향후 남북 관계」 8-9쪽>

나. 주변국 협조원칙(국제적 보장방안)

(1) 미국에 의한 보장방안(2+1 또는 3자회담)

○ 3자회담과 관련, 가장 큰 장애물은 국내여론일 것임.

- 한국정부가 "선 남북문제 해소, 후 3자회담"이란 기본입장을 고수해 왔고 남·북한간에 납득할만한 신뢰구축 없는 휴전협정의 해체와 평화협정의 체결을 일관성 있게 반대해 왔기 때문에 3자회담에의 동참은 국내정치적 저항을 유도할 수 있음. <문정인(연세대 교수), 「미국 주도에 의한 3자회담 대두 가능성에 대비하는 문제」『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211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10)>

○ 3자회담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남한을 배제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온 북한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된 직접 당사자간의 실질적 협의가 가능함.

- 남한은 미국을 통해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을 실효성 있게 보장받을 수 있음.

  ·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중국의 간여를 배제하고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대북협상을 추진할 수 있음.

- 3자회담의 결과 3자간의 평화협정 외에 남북평화협정과 북·미 평화협정의 동시체결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신축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음.

○ 단점은 다음과 같음.

- 북한이 남한 배제전략을 고수할 경우, 3자회담이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으로 이원화될 수 있음.

  · 이 경우 남한이 한반도문제 논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 한반도문제가 남북간 대화보다는 북·미간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될 우려가 있음.

- 미국이 3자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할 경우, 북한이 이에 반발, 회담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이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임을 감안, 남북한 및 미국 3자에 의한 평화체제 형성 및 보장방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

음. <제성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및 보장 방안 : 장단점 분석을 중심으로」 6-7쪽(통일정책실 세미나 '94.11.24)>

○ 남북한 갈등관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통일의 실현과정에 있어 미국의 역할은 절대적인 반면, 그 밖에 역내국가들(러시아, 중국, 일본)의 역할은 극히 제한되어 있음.

- 이러한 시각에서 조망해 볼 때, 한반도 갈등 및 통일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 중 「2+4」제안이나 다자간 안보협력 제안 등 주변국가 전부를 참여시키는 한반도 갈등규제나 타결방안은 현실적으로 그 설득력이 약하다 하겠음.

- 때문에 한반도 갈등관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있어 주요 관건은 남북한과 미국, 3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음. <문정인(연세대 교수), 「국제질서 개편과 남북관계의 재평가 - 전략적 공세주의를 위한 제언」 64-65쪽(「통일경제」 '95.5)>

○ 특히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를 분열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세의 성격이 강하므로, 한국이 3자회담 수용 등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이서항(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회담 문제 검토」 5쪽(남북회담사무국 워크숍 '95.6)>

○ 북한의 대미 직접협상 고집으로 한국이 실질적인 한반도문제 논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문제가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보다는 미국과의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될 위험성이 있음.

-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보다 더 반영하여 북한의 입장이 불리하게 될 경우 북한은 단기간 내에 회담을 거부하고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키기 힘들 것임.

○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를 회피하고 대미 직접협상을 완강히 추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한·미간 긴밀한 협의하에 남북한 및 미국이 참여하는 우리식의 「3자회담」을 개최하여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정상화의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박영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모색」 55-56쪽>

○ 「2+1」방안은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남북한의 불가침 및 평화협정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 한반도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최소화되면서

- 한·미 공조체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 미국의 대 북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안고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음.

- 휴전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중국이 배제됨으로써 「2+1」방식에 반대할 것이므로 보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미국이 남북한 평화협정의 중립적 보장자로 참여하게 될 경우 전통적 한·미 동맹관계의 이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국제적 보장자의 수가 적을수록 보장자의 대 한반도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민족통일연구원,「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56-157쪽>

(2) 미·중에 의한 보장방안(2+2 또는 4자회담)

○ 남북한 당사자 원칙과 현실의 상황변화를 적절히 감안한 새로운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그러한 방식으로는 남북한, 미국, 중국(한국전쟁의 주요 4당사자)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고 평화를 회복하는 4자합의(2+2)를 고려할 수 있음. <백진현,「현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문제」 53쪽>

○ 법리적으로는 남북한간에 우선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고 이를 한국전쟁에 참여한 바 있는 미국과 중국이 추인·지지 또는 보장하는 2+2(남북한+미·중) 방식이나 남북한과 관련국인 미·중이 동시에 참여하는 4자회담이 보다 더 타당함. <이서항,「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회담 문제 검토」 4쪽>

○ 이 방안은 주변국들중 남북한에 대하여 각기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두 강대국의 보장이기 때문에 가장 실효성이 있는 보장이 될 수 있음.

- 더욱이 한국전 참전 당사자인 미·중을 보장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에 공헌할 수 있음. 특히 한·중관계의 발전추세를 활용하여 중국을 통해 북한에 대해 남북간 직접협상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서 한계가 있는 중국이 한국의 기대만큼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북·미간 직접협상을 권고하는 역할만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문제의 실질적인 논의에서 한국의 소외를 방조할 가능성이 있음. <박영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모색」 55쪽>

○ 「2+2」방안의 장점은 휴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모두 참가하는 방식으로 법리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보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임.

○ 특히 북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적 보장방식 가운데 「2+2」방식을 가장 선호할 가능성이 큼.

- 북한은 대미 관계개선 차원에서 미국의 참여·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국제적 보장자로서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대미 견제 및 북한의 국익을 증진할 수 있음.

- 북한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세개입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의 참여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 반면 「2+2」 방안의 단점은 다음과 같음.

- 한반도 정치·군사문제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를 보장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평화보장력도 약화될 수 있음.

-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여타 주변국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배제된 한반도 평화보장에는 반대할 것임.

- 한반도 평화보장에 일본이 배제될 경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본의 경제·외교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65-166쪽>

o 한국전쟁으로 인한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데에는 먼저 '2+2 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 이것은 추후 러시아와 일본을 추가시켜 동북아 다자간 포괄적인 안보협의체로 발전시켜나가는 토대가 되어줄 것임. <이삼성(한림대 정외과 교수),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323쪽(도서출판 당대 '95.11.20)>

o 남북한간의 실체인정을 전제로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장력과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2+4」방식이 유리하지만, 외세개입 가능성의 최소화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2+2」방식을 추진하도록 함. <강원식(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보장문제」 29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12.5)>

(3) 미·중·일·러에 의한 보장방안(2+4 또는 6자회담)

○ 2개 강대국이 추가됨으로써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미국의 유보적 자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보다는 주변국의 보장이 부각됨으로써 '한반도문제의 국제화'가 초래될 수 있음.

- 주변국들이 자국의 안보위협 인식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제각기 개진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 경우 단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효율적 보장에 한계가 노정될 수 있음.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및 국제적 보장 방안 : 장단점 분석을 중심으로」 5쪽>

○ 제네바협의 틀인 2자회담(미국과 북한)에서 6자회담(미국, 한국, 일본, 중국, 북한과 러시아)으로 전환하도록 탈냉전 시대의 주위환경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북한의 한국 배제전략도 한계가 있고 한반도 주변국가도 극동의 평화와 안보에 공동관심이 있는 한 6자 안보협조에 동감이 갈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평화협정을 통하여 미국과 수교정상화를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와 관계개선도 원하는 고로 남한과 중국, 일본과 개방을 하면서 적대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을 시도해야 함. <김용제(미 퍼시픽스테이트대 총장), 「미·북 관계개선 과정에 있어 북한의 공세적 평화협정주장, 봉쇄방안」『미·북관계 속의 「평화협정」 제기, 그 대처방안』 84-85쪽(민주평통 전문가 정책포럼 '95.5.15)>

○ 북한과 서방국간의 관계가 일정수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의

보장체제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북·미간 직접협상 기회를 회석시킬 수 있는 2+4 보장방식의 실현가능성도 단기적으로 높지 않음.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북한과 서방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북한은 「2+4」회담 형식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공존체제 보장 기구로 인정하여 수용할 가능성도 있음. <박영호,「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모색」 55-56쪽>

○ 「2+4」방안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2+4」방식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요 관련 당사국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한반도 평화보장이 가능함. 특히 일·러를 한반도 평화보장자로서 포함시킴으로써 미·중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고, 일본의 실질적인 경제적 공헌을 유도할 수 있음.

- 「2+4」방식은 보장국들 가운데 특정 쌍무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여타 국가가 한반도분쟁을 조정·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 분쟁발생시 분쟁의 조정·중재가 「2+2」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함.

- 「2+4」방식은 모든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참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로 발전될 가능성이 큼. 역내 국가들은 「2+4」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내 군사적 신뢰구축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역내 군축문제를 다루는 소지역적 집단안보기구로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2+4」방안의 단점은 다음과 같음.

- 「2+4」방식은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개입을 인정·제도화함으로써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2+4」방식은 한반도 주변4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개입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큼.

- 「2+4」방식은 한반도 평화보장문제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 외세가 개입할 가능성이 증대됨.

- 한국은 주변4국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보장 및 통일과정상의 외교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외교를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 부담이 증가함.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71-172쪽>

(4) 참전16개국과 중·러에 의한 보장방안(2+16+2)

○ 이 방안은 주체성, 현실성, 보장성을 모두 구비한 방안으로 "월남평화조약형"에 가까운 것으로, 이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봄.

- 더욱이 이는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의한 제네바 정치회담의 당사자를 포함하므로 이는 체결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국제연합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음. <김명기,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문제」 52-53쪽>

○ 한반도문제의 논의와 동북아지역질서 재편과정에 실질적 당사국 이외에 역외국가들을 참여시킴에 따라 사안을 복잡하게 만

들 우려가 있음.

○ 특히 참전 16개국의 소집 및 이들과 중·러의 회동을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외교적 비용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임.

○ 한반도문제에 대한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수락과 보장합의가 있은 후에나 중·장기적 차원에서 보완적인 보장방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및 국제적 보장 방안: 장단점 분석을 중심으로」 6쪽>

○ 이 방안은 한국전쟁 상황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한국전 참전당사자가 전쟁상태를 종결한다는 국제법적 형식면에서 유용성이 있는 방안임.

- 그러나 한반도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당사자의 수락과 보장 합의가 있은 후에나 중장기적으로 보완적인 보장방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문제의 실질적 당사국 이외의 역외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실효성이 저하될 위험성이 있음. <박영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모색」 55쪽>

○ 이 방안의 장점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의 당사국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 당사국에게 모두 만족을 줄 수 있고, 한국전쟁 참전16개국과 중·러가 참여하는 해결방안이므로 유엔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평화조약의 당사자와 보장조약의 당사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 방안의 단점은 다음과 같음.

- 한국전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에 참여하는 반면 일본이 제외됨으로써 일본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77-178쪽>

(5) 동북아 안보협의체에 의한 보장방안

○ 한반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아·태지역에 CSCE와 같은 집단안전보장형 기구를 창설한다는 구상은 이 기구가 지역적 협력을 통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분위기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 지역국가들의 다양한 안보 이해와 다루는 주제의 다양성 그리고 회의체적 기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분쟁예방 또는 불가침을 효율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평화보장 기구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동북아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국가들간에 안보문제협의를 위한 소지역적 집단안전보장체제는 주변당사국들의 수락여부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 기구를 통해 동북아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부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같은 다자간 동북아회의가 실현되어 처음에는 소규모의 분쟁협의회적 성격의 기구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한반도

군축문제를 비롯한 상호 신뢰구축조치들을 축적시켜 나갈 경우, 장차 동북아 전지역의 분쟁문제나 군축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기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임. <전동진, 「국제적 평화보장 사례연구」 60-61쪽>

○ '동아'의 비대칭적인 전략상황을 고려할 때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다변적인 보장이나 집단안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임. <안병준, 「'남북기본합의서' 후의 남북한관계와 평화체제」 66쪽>

○ 평화체제를 위한 전환문제는 양자간의 협상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나 평화체제의 보장만큼은 다자간의 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임.

- 미·일·중·러가 공동성명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 남북간의 조속한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촉구를 권장할 수 있음. <홍규덕(숙명여대 교수, 전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전망과 대응책」 89-90쪽(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3.9)>

○ 지역평화체제가 성립되었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과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나 그 시점이 문제가 될 것임.

- 늦어도 중기위협구조의 말기에는 다자간 안보체제의 구상이 실천된다고 가정하면 다자간 안보체제라는 지역평화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이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확보하여 유지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다행히 다자간 안보체제가 중기의 진입기에 수립되면 남북한이 한반도 갈등관리체제와 지역 갈등관리체제에 이중적으로 개입되어 남북한간의 합의·이행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이 지역체제의 틀 속에서 해결될 수도 있음. <이석수, 「한반도 평화체제의 연계구조 : 갈등관리의 다차원적 분석」 50쪽>

○ 북한의 대미 협상위주의 운용전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UN이나 아·태경제협력체(APEC), 아세안지역포럼(ARF) 등과 같은 다무적 국제관계의 활용을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음.

- UN은 국제기구로서의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APEC은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이 다르고 ARF는 아직까지 단순한 대화·협의체 수준에 머물고 있음. 더욱이 이들 기구의 활용은 한국이 지금까지 강조해온 「남북한 당사자원칙」에도 위배됨.

- 물론 이들 기구들이 남북한 사이의 대화를 주선하고 신뢰구축의 장으로 활용될 수는 있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다무적 국제관계로는 활용될 수는 없을 것임. <이서항(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정전체제의 전환과 AREC 및 UN 등 다무적 국제관계 활용 가능성 검토」 『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145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10)>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주변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는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함.

- 주변국가들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만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개입과 보장이 필요하다는 상호 대립적인 면이 있는 만큼, 주변국가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동북아 안보체제의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김덕중, 「핵연계전략으로서의 '평화협정' 제기와 대응책」 67쪽>

○ 동북아 안보협력회의는 동북아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국가들 간에 안보문제 협의를 위한 소지역주의적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으로 주변당사국들의 수락여부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 기구를 통해 동북아 안보문제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장기적인 신뢰구축 차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같은 다자간 동북아회의가 구체화되는 경우 처음에는 이 기구의 협의회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에 대한 초보적인 신뢰구축 수준의 합의만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나,

- 이 기구가 협의회적 성격의 기구로부터 집단안보기구로 발전하여 한반도 군축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지역 전반의 안보문제에 대한 상호 신뢰구축조치들을 축적시켜 나아갈 경우, 장기적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안전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이 방안의 단점은 동북아 안보대화가 동북아지역의 소지역 다자간 협력체로 조직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단기적인 추진방안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이 방안은 남북한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반도 평

화보장을 위한 「2+2」 혹은 「2+4」방안이 실행된 이후 한반도 군비통제를 동북아지역 군비통제와 연계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방안임.

○ 따라서 이 방안은 남북한 당사자들이나 주변4국이 합의하고 보장한 사항을 추인 혹은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제한적 효과밖에 가지지 못할 것임.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85-186쪽>

○ 한국의 시각에서 볼 때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레짐의 구축은 우리에게 유리한 한반도 통일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것임.

-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레짐 구축과정 및 구축을 통한 동북아 4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정책은 한국의 통일외교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다른 동북아 강대세력과는 달리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중위권 세력'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 즉 강대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강대세력으로부터 의혹과 의구심을 적게 받는다는 유리한 입장을 바탕으로 21세기 동북아의 새 지역질서 창출을 겨냥한 다자간 안보협력레짐 구축에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음. <김국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레짐과 한반도 안보」 21, 36쪽(『한반도 군비통제』, '95.10)>

○ 남북한의 불신제거와 상호 신뢰구축을 담보하여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쌍방간의 평화체제 구축과 병행, 동북아 6개국 평화회의와 같은 다자간의 협의체 구성도 아울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장희,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19쪽>

다. 남북간 합의 존중원칙

o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명시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는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남북한이 아직 이것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관해 합의한 바가 없음.

- 우리 정부가 먼저 「남북간 공고한 평화상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청사진)을 천명하고 그러한 평화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각자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제성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 60쪽>

o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뿐 아니라 남북간의 모든 현안문제에 관하여 북한과 대화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률은 모든 문제를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하여 발효시킨 남북 '기본합의서'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철의 원칙'을 비타협적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것임.

- 사실상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문제의 '기본합의서'를 전면적으로 실천·이행할 경우 자동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그러한 뜻에서 본다면 '기본합의서'는 남북간에 언젠가 체결될 '평화협정'의 모든 '실체'를 갖추고 있는 문서임. 따라서 '기본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별도의 '평화협정'은 불필요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님.

- 역으로 말하여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설사 '평화협정'이라는 제목의 또 하나의 '합의문서'가 생산된다고 해서 그것이 이행되리라는 보장은 없음.

- 따라서 우리는 만약 북한이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은 북한과 또 다른 '합의문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변화에 의하여 '기본합의서'의 이행 쪽으로 북한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의연하게 지켜보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함.

- 과거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북한은 '원칙'은 배타적으로 고수하고 다만 '원칙'을 실현시키는 '방법'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던 반면, 우리는 '대화'를 하는 외양에만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제시한 '원칙'을 항상 흥정의 제물로 삼아 버리는 주객전도의 '사석'작전을 일삼아 왔다는 점을 깊이 자성해야 함. <이동복(국회의원, 전 민족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상전략」『한국의 정전체제 유지와 평화체제 구축방안』 128쪽(국방군사연구소 군사사 세미나 '95.10.10)>

○ 향후 대북관계의 모든 정책은 기본합의서에 기초하여 추진하는 관행을 축적해야 함. 설사 북한이 응하지 않더라도 기본합의서상 이미 합의·구성된 남북한 분과위, 공동위 기능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

-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조차도 우리는 기본합의서에 입각, 비판하고 요구해야 함.

- 한 예로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침범행위도 기본합의서상 불가침선 위반으로 비판하는 관행을 쌓아야 함. 그래서 북한을 정전체제에서 기본합의서 체제 안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해야 함. <이장희,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19쪽>

○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 만약 이러한 보장이 없이 평화체제를 비롯한 모든 통일과정이 기존의 합의를 무시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틀에 따라 기초하여 추진된다면 남북한간의 모든 합의가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헛수고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최영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 4자회담을 중심으로」 115쪽>

Ⅲ. 북한의 의도

1. 미·북 평화협정 주장 의도 분석

○ 북한은 현재의 휴전기간을 전시로 보고, 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해 전시상태의 종결을 주장하고 있음.

- 북한이 이러한 논리로 보는 것은 현재 그들의 주민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통한 체제유지 강화에 도움이 되고,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정치적 수교를 하여 민족문제 해결에 그들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임. <이장희,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 방안」 26쪽>

○ 북한이 '94.4.28 외교부 성명을 통해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국에 제의한 저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 첫째, 미·북 고위급회담을 한반도문제의 회담으로 이용해 보려는 것임.

- 둘째, 한반도 문제의 "미·북화"를 사실화해 보려는 것임. 즉,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를 미국과 북한으로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남한과 미국간의 우호관계를 이간시켜 보려는 것임.

- 셋째, 정전협정을 폐기시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임. 즉, 현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시켜 현 국제연합군 사령부를 해체시키고 이에 따라 국제연합군인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이 국제연합의 이름으로 북한에 대해 어떠

한 군사적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넷째, 미·북간 국교를 정상화하려는 것임. 즉 궁극적으로 미·북간의 국교를 정상화하여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설정하여 국제적 고립을 면하고, 경제적 교류관계를 설정하여 경제적 난국을 피해 보려는 것임. <김명기(명지대 교수), 「4.28 북한 외교부성명에 대한 분석·평가와 향후 대처방향」『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60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5)>

○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협상요구는 그 필요성에 대한 절실한 인식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산이 깔려있다고 생각됨.

-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에 북한은 보다 더 확실한 안보장치를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느낀 듯 함. 그의 일환으로 북한은 마치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듯한 행동을 공공연히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휴전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경제실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북한간의 평화협정 체결은 서방의 자본, 기술협력을 보다 더 촉진시킴으로써 빈사상태의 북한경제를 회생시켜 주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으로 여겨짐.

- 체제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최소수준의 개방으로 자유화의 "바람"을 막으면서 개방에 적응할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남한과의 관계증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일 것으로 여겨짐.

o 이와 같은 대미 평화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절실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를 둘러싼 대미협상에서 대미평화협정 협상에 미국이 조만간 호응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짐. <이영호, 「4.28 북한 외교부성명에 대한 분석·평가와 향후 대처방향」 79-81쪽>

o 북한은 평화협정 주장을 국제적 환경과 대내외적 정세를 고려, 상황에 따라 남북간 협상, 북·미간 협상, 3자회담 등으로 변형시키면서 그들의 선전 목표를 극대화 시켜왔음.

o 또한 북한은 대부분의 경우 평화협정과 군축제의를 밀접하게 관련시켜 왔음.

- 이는 북한의 적화통일에 가장 큰 장애인 미군철수 및 정전협정 무실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핵무기 개발을 기화로 시작된 미국과의 대화창구가 가능해지자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명분을 축적하고 있음.

- 1, 2차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평화협정에 대비하여 핵무기 포함한 무력불사용, 위협금지 등을 포함하는 공동발표문을 의도적으로 삽입함. <박주현, 「미·북간 평화체제 전환 논의와 관련한 군정위 위상변화 전망」 99쪽>

o 북한이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체결 및 이를 위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 협상을 제의하는 구체적인 의도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분석됨.

- 미국과의 관계개선 과정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

-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둘러싼 한·미관계 이간 및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와해 유도

- 한국을 배제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북·미간 문제화』 기도

- 대미 관계개선의 마지막 시점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특별사찰을 요구할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 상존 <제성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시 운영방안 - 군사정전위 무실화와 관련하여」 『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117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9.23)>

○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주장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그들의 대남 적화통일 실현의 최대의 걸림돌을 한·미 군사동맹이라고 보고, 이러한 동맹관계를 와해시키는 것을 대남정책 및 대외정책의 최대목표로 삼고 있음.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주장은 이러한 북한의 정책목표를 평화라는 수식어로 포장한 것에 불과함. <백진현, 「현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문제」 47쪽>

○ 첫째, 북·미 평화협정이 노리는 최대의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관계의 와해임.

- 북한은 정전위 무력화 책략을 통해 정전협정의 폐기와 유

엔사 해체를 도모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와해를 기도하고 있는 것임.

○ 둘째, 미·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체제유지를 위한 전략의 일환임.

- 북한은 현 휴전협정에 의한 정전상태를 대미 평화협정에 의한 평화상태로 전환함으로써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셋째, 대남선전공세와 김정일 지도력 과시의 효과를 겨냥한 것임.

- 북한은 남한내 일부 반체제 성향의 젊은이들이 북한의 주장을 쉽게 모방할 가능성을 엿보면서 궁극적으로 남한 내부를 교란하려는 술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임.

-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협상의 논의에 끌어들이는 것만으로도 대내외적으로 북한 외교력의 과시 효과가 있어 김정일 지도력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듯 함.

○ 넷째, 대미협상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김구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한반도 평화체제 체결가능성과 한계」『미·북관계 속의 「평화협정」제기, 그 대처방안』 40-45쪽(민주평통 전문가 정책포럼 '95.5.15)>

○ 북한은 지난 40여년간 지속적으로 남북간 혹은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함으로써 대내외적 평화이미지 고양과

정치상황 변동을 노리는 일석이조의 전략을 펴고 있음.

○ 미국의 대북 태도가 다소 유연해 졌다는 정책적 변화를 감지하고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미국과의 직접협상 기회를 살리기 위한 호기로 활용하고자 함.

○ 북한은 한국이 어떠한 협상과정에서도 배제되면 될 수록 한국이 협상에 나오려는 반대급부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럴 경우 한국과의 협상재개를 대가로 전제조건을 강화시킬 것임. <윤진표,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에 따른 군사분계선 관리 및 대응방안」 6-9쪽>

○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북한의 체제유지를 보장해 주는 담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음.

○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 첫째,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둘째, 주한미군의 대량감축 또는 완전철수 실현, 넷째, 팀스피리트훈련 영구중지 등이며,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연방제 통일의 기반을 조성, 궁극적으로는 대남 적화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북·미간 협상전략의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음.

- 이것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1993년 6월 이래 북한과 미국간에 개설된 대화채널을 십분 활용하는 가운데 미

국과의 접촉기회를 가능한 한 확대하고, 최대한의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지렛대로써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이용한다는 것을 말함. <제성호,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 전략: 내용, 의도 및 문제점」 35-37쪽>

○ 일단 평화협정을 미국과 체결함으로써 미국과 우호관계를 수립하게만 된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적대관계가 해소된 이상 한반도에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임.

- 바로 이와 같은 수순을 염두에 두고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 북한의 목적은 그들의 한반도 혁명과업 수행에 결정적으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한·미 군사동맹체제를 와해시키는 데 있는 것임.

- 그러므로 한국정부 당국과의 대화는 미·북간 평화협정체결을 추진하는 그들의 노력에 방해가 되면 되었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임. <황원탁, 「현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의 정전체제 유지와 평화체제 구축방안』 27-28쪽>

○ 북한은 평화협정체제를 통해서 북한의 대외적인 외교·경제관계 정상화의 완전한 확보를 추구하고 있음.

- 이는 북한 정치체제의 안정에 대한 국제적 인정의 확보이며, 또한 그 전제로서 북한이 바라는 군사적 안보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임.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323쪽>

○ 북한당국은 일단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현재의 체제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적화 목표의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음에 틀림없음.

- 따라서 북한에게 있어서 중심고리는 바로 '미·북평화협정 체결문제'이며 경수로, 식량난, 군사위협 등 기타 모든 문제는 오직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짜놓은 들러리 이슈 즉, 전술적 계략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남만권(국방연구원 군축전략연구실장),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3쪽(『주간국방논단』 623호 '96.2.26)>

○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정책이나 동향에 대해 지나치게 의도분석에 치중하여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유념해야 함.

-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주장의 궁극적인 의도가 공세적인 것인지 수세적인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없다는 것임. <백진현,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8쪽>

○ 핵카드 효용성 소멸 이후 "평화협정"이라는 새로운 대미 협상카드 개발

- "벼랑끝" 협상을 주무기로 삼는 북한의 외교행태로 보아 새로운 "벼랑끝" 협상 카드로 대미 평화협정 요구를 활용

- 향후 미국과의 미사일회담 또는 미군유해 송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목표

○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평화협정" 카드 활용

- 한국을 배제시키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전개하면 대미 관계개선 장애물(남한의 반대, 정치신뢰 미구축) 제거 가능

○ 실질적 안보위협 타개책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

- 평화협정 체결후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소시켜 체제 불안정상황 극복 노력

-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역할축소를 유도하여 남한으로부터의 위협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략 <김계동(정치학 박사),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책동 관련, 군사적 도발유형(시나리오)과 정전체제 관리문제」 10-11, 13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4.17)>

○ 과거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공세는 베트남식 적화통일에 영향받은 것으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조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세적 의도가 깔려 있었으나 최근 북한의 의도는 보다 복잡해진 것으로 생각됨.

- 물론 여전히 한·미관계의 분열을 노리는 공세적인 의도도 있겠으나, 앞서 지적했듯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고 한국과의 접촉을 배제하고자 하는 수세적인 의도가 커진 것도 사실임. <백진현,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7-8쪽>

○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의 현실적 목표는 미군철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 위기국면을 극복하고 다방면에서 활로를 타개하는데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사료됨.

- 즉,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는 협정체결 자체에 비중이 두어져 있다기 보다는 이 공세 과정에서 남한 배제외교를 실현하고 한·미관계의 유대 약화를 시도하는 등 남한과의 경쟁카드로 활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봄.

- 또한 이 공세 속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의 '대미 의존성'을 부각시켜서 전반적인 남북대화, 대서방관계에서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도 아울러 지닌 것으로 판단됨.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4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과 전략 예상」 11-12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6.21)>

○ 북한의 평화체제 주장의 저의를 분석해보면 순수한 민족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현실성 있게 남북한 민족의 대통합이나 조국통일을 위한 조건으로써의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 북한 자신의 체제유지전략, **聯美封南戰略**, 대남적화전략이라는 그들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기본적 의도에 따라 전술적으로 평화체제를 제의·주장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알 수 있음.

○ 결국 북한이 제의한 평화체제란 그 기본입장이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는 오직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남한배제전략으로 집약되며,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전협정 사문화전략과 미·북 직접협상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됨. <최영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 4자회담을 중심으로」 111쪽>

2. 정전체제 무실화 의도 분석

○ 군정위 해체를 주장하는 북측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한국의 정통성에 대한 악의적 정치선전적 목적
- 미국과의 직접대화의 당위성 확보
- 남북한 군사관계에서 주한미군 존립 근거 및 법적 근거 제거
- 유엔사 기능상실, 평화분위기 조성 후 미군철수 여론 형성 <박주현, 「미·북간 평화체제 전환 논의와 관련한 군정위 위상변화 전망」 103쪽>

○ 북한이 정전협정 및 정전기구 무실화를 기도하는 구체적인 의도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분석됨.

- 유엔사 기능상실 및 조기 해체 유도
-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존립 근거 제거
- 평화분위기 조성 후 미군철수 여론 형성 <제성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시 운영방안 - 군사정전위 무실화와 관련하여」 117쪽>

○ 북한이 실제로 남북한간의 군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법적 틀인 정전협정체제를 와해시키겠다는 의도보다는 탈냉전 시대상황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위상을

역으로 보상받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적 차원의 전략이라고 봄. <윤진표,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에 따른 군사분계선 관리 및 대응방안」 6쪽>

○ 북한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제고함으로써 이를 대미 직접 군사관계 개선의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며 한편 대미관계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얻고자 고의로 한반도에 위협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임.

- 위기관리체제의 수립을 위해서는 미·북한 직접 군사접촉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됨. <한용섭(국방대학원 교수), 「북한의 '잠정협정' 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12-13쪽 (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3)>

○ 위기조성을 통해 잠정협정 체결을 위한 대미협상을 성사시키려는 의도

- 위협의 수준을 높혀 선거를 앞둔 클린턴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여 북한이 제안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잠정협정 체결과 미·북공동군사기구 설치를 위한 대미협상을 성사시키려는 brinkmanship strategy

- 미·북 미사일협상에서 북한이 미·북 잠정협정 체결과 공동군사기구 설치문제를 협상의 의제로 포함시키려는 의도

○ 한·미 공조체제 시험

- 정전협정 대체 문제, 미·북한간 「미사일회담」, 「유해송환회담」 등 군사접촉과 관련된 한·미간의 의견차이를 노정시켜

한·미간을 이간시키려는 의도

○ 한국내 불안심리 조성 <김용호(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최근 북한의 DMZ불인정선언과 대미잠정협정 체결 공세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안」 2-3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4.8)>

○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

- 현재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별로 진척되지 않는 점을 감안,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과의 장성급 군사회담 요구

- 적절한 무력시위를 동반한 대미 압박전술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것이라는 계산

○ 무력시위는 "북한붕괴 임박"이라는 국제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술 포함

- 체제붕괴설에 대하여 계획되고 일사분란한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체제가 견고히 지탱하고 있으며, 대내 결속에 문제가 없음을 과시

○ 한국의 혼란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고도의 양면전략

- 한편으로 대남비방 및 무력시위를 하면서 다른 한편 대화를 제의하여 한국정부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화전양면전술

○ 한·미간의 갈등조장

- 한국과 미국의 견해차가 노정되는 사안에 대해 집중공세를 가함으로써 양국의 견해차 폭을 넓혀 갈등을 조장시키려는 전략

- 특히 미국이 책임을 맡고 있는 공동경비구역에서의 무력시위에 대한 한·미의 위협지수 인식도 차이를 교묘히 이용 <김계동,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책동 관련, 군사적 도발유형(시나리오)과 정전체제 관리문제」 10-12쪽>

○ 북한의 이번 비무장지대 카드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의 직접적인 평화협정의 체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즉 정전체제가 무용화되고 그들의 표현대로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보장할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의 당위성을 강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평화협정을 앞당기고, 현재 진행중인 미·북 미사일 협상에서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한·미 정상회담(4.16)을 앞둔 시점에서 대북 직접협상의 필요성을 한·미 양국에 노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음. <배한동(경북대 교수), 「미국과 일본의 대북수교 전망」『한반도와 동북아 4강관계』 35-36쪽(외교안보연구원·경북대 세미나 '96.6)>

Ⅳ. 정전체제 관리문제

1. 현 정전체제의 문제점

가. 전쟁억지 및 위기관리체제로서의 정전협정체제 평가

○ 유엔군측의 입장에서 보면,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군정위를 통한 대북 접촉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동안 460회의 본회담의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의적임.

- 정전 이후 지금까지의 본회담 내용을 분석해 보면, 협정조인 직후에는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회담이 실시되었으나,

- 정치상황의 변동에 따라 군사적인 면보다는 정치적 성격을 많이 띄게 되었고

- 정전유지에 관한 협의가 아닌 일방적 발표 및 상대방 비난의 선전장으로 활용되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황원탁,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전협정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27쪽>

○ 휴전협정의 내용을 보면 무력충돌 방지를 위하여 매우 세심한 배려와 제도를 마련하였음.

- 이와 같은 규정이나 제도는 잘 지키기만 하면 무력충돌의 방지를 위하려는 매우 효과적인 메커니즘임. <유병화, 「군사분계선에 대체할 남북경계선 설정의 법적 문제와 대책」 6-7쪽>

○ 정전협정체제는 전쟁억지체제로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됨.

- 역사적으로 가장 긴 정전기간이라고 할 정도로 42년간의 정전 상태 유지가 이를 입증함.

※ 정전협정은 1907년의 헤이그 "육전법규 및 관례에 관한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어느 일방이 파기하려 든다면 파기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정전상태하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대소사건들을 협의 처리하는 위기관리체제로서는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본래의 정전협정기구의 기능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되어 왔음.

- 다만 정협기구가 쌍방간에 유사시 각방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대화와 접촉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평가되어야 할 것임.

- 쌍방의 군사관계가 쌍방간의 정치관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대화의 성과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상황의 호전 여하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또한 간과할 수 없음. <황원탁, 「현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대책」, 24-25쪽>

나. 정전협정체제의 문제점

○ 정전협정체제가 전쟁억지 차원에서는 효과적이었고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 정전협정체제가 남북관계를 간접화시킴으로써 한국은 사실상 남북 군사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전쟁 당시 교전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전 후 실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는 집행 당사자이고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관에게 책임을 지우고

- 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북한에게 직접 책임을 따지지 못하고 유엔군사령관에게 의뢰해야만 하는 모순이 있음.

○ 물론,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남북관계 이전에 한·미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임.

- 북한은 이와 같은 한·미관계를 그들의 대남전략에 이용하여 왔음.

- 즉, 정전협정체제는 한국정부와 한국군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보지 않고 미국을 당사자로 보는 북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소지를 제공해 온 것임.

○ 또한, 1991년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고 이에 기초하여 군사부문에서는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 실제는 그 기능의 대부분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소관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장차 군사정전위원회가 있는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임. <황원탁,「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전협정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34쪽>

○ 남북한간의 불안정한 대치는 쌍방간에 신뢰할만한 협의통로가 없다는 점에 의하여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어 왔음.

- 정전협정에 근거한 군사정전위원회는 협정의 위반사항을 항의하는 제도 정도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 북한의 무장간첩 남파, 국내외 테러 자행, 비행기 폭파 등으로 남북한간의 군사적인 불신은 더욱 깊어져 왔음. <차영구,「남북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군사적 방안」 5쪽>

○ 정전협정체제는 두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문제는 정전협정체제는 당연히 새로운 평화체제로 대체하여 남북간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상태를 이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이 아직도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문제는 정전상태하에서 위기관리기능을 수행해야 할 정협기구가 와해되고 쌍방 사령관간의 주 통신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임.

- 이와 같은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에서 비롯됨. <황원탁,「현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대책」 25쪽>

다. 향후 북한의 정전체제 무실화 조치 예상

○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평화협정을 그 Agenda에 올려 놓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부정적인 행태는

-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이 중감위 철폐, 군정위로부터의 철수, 판문점내 무장병력 증강 등 군사정전협정상의 합의내용들을 하나하나 무효화하는 조치들을 함으로써

- 상대방으로 하여금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도록 하는 것임.

○ 물론 정전협정내용의 "일방적인 무효화"에 있어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는 무력분쟁을 야기시키지 않는 조치들에 국한될 것으로 보임. <이영호, 「4.28 북한 외교부성명에 대한 분석·평가와 향후 대처방향」 82쪽>

○ 북한이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술적 차원의 조치

- 판문점 경비장교 및 공동일직장교회의 불참 및 관련요원의 철수

- 경비병을 정규병력으로 교체함으로써 판문점 공동경비지역을 사실상 군사분계선으로 분단

- 유엔측 경비병력 및 유엔측 중감위 요원의 철수요구 및 불응시 안전 불보장 선언 <문광건(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주장 관련, 정전체제 관리방안」 5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5.2)>

○ 과거 북한은 정전협정체제를 파괴하려 한다기 보다는 정전협정

체제를 견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었음.

- 북한은 남한의 군사력의 직접적인 압력을 받음이 없이 정치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고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전협정체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왔음.

○ 북한이 현재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정전협정 파기를 위한 책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전상태를 파기한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북한의 시각은 적어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변화하지 않을 것임.

○ 북한의 저의가 분명하고 이에 대한 한·미의 입장이 확고한 이상,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변화되어 남북간에 군사적 위협이 소멸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정전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위기관리체제의 파행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것임. <황원탁, 「현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대책」 19, 28쪽>

○ 정전체제의 무실화를 대내외에 선전하고 미국이 대북협상에 응하도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무장시위, 비무장지대 무단출입과 병력 및 중화기의 배치, 군사시설물의 구축 등 계산된 군사적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의 월경행위나 서해 5도 등에서 제한적인 도발을 기도하여 한국군과 미군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됨. <김용호, 「최근 북한의 DMZ불인정선언과 대미잠정협정 체결 공세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안」 9쪽>

○ 북한은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부정적일 경우,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불가피하게 하는 "최종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 상존

○ 현 정전협정체제의 일방적 폐기선언

- 쌍방의 군사정전위간 직통전화를 철수하고 UNC(미측)와의 접촉을 중단

- 정전협정은 쌍방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소멸될 수 있으나, 일방이 일방적으로 폐기선언 하였을 경우 현실적으로 사문화가 불가피함.

○ 병력 및 무기를 비무장지대에 대거 투입하고 훈련을 강화

- 비무장지대 소멸로 완충지대 없이 휴전선 상에서 직접적인 군사대치 상황 전개

-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택하여 공포탄을 발사하는 등 군사력 시위를 하고, 정찰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 군부는 체제불안정 상태에서 내부통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휴전선 일대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음.

○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남측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여 남한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총격도발

- 한국이 전쟁으로의 비화를 우려하여 섣부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 "치고 빠지는 식"의 총격 도발

- 한국군의 맞대응시 한국이 도발하였다는 명분으로 한국배제 대미협상 요구 강화

○ 군사분계선 획정이 불분명한 백령도·대청도 등 서해 5도지역에 대한 군사도발

- 서해 5도에 대한 군사도발은 해역통행 위협(어선, 선박 등)으로부터 시작되어 해군력 집중 등 공중정찰 강화, 무력점거 시도의 단계적 수순을 밟을 것임.

- 서해 5도에 대한 정전협정상의 문제점 해결 협상을 요구하며 이를 평화협정 협상에 연계

○ 기습적인 국지도발 가능성

- 북한의 요구에 대한 미국의 수용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경우 국면전환용 → 새로운 형태의 군사협상 가능

○ 전면전 감행

-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맞대응할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

- 북한체제의 현 상황으로 볼 때 붕괴 직전 최후의 선택 이외의 전면적 도발은 불가능하며, 국지전에 의한 전면전으로의 비화 가능성은 있음. <김계동,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책동 관련, 군사적 도발유형(시나리오)과 정전체제 관리문제」 19-21쪽>

2. 정전체제 무력화에 대한 대응책

○ 북한이 정전협정의 시행을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완전 철수하여 정전협정의 시행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을 방지할 사전적 예방조치의 방법은 없음.

- 다만 사후적 구제조치인 복구로서 대항할 수 있을 뿐임.

- 국제연합헌장상 무력복구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후적 복구는 비무력복구에 한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될 뿐임.

- 북한에 의한 위법한 정전협정의 폐기나 시행정지가 국제연합헌장 제39조에 규정된 "평화에 대한 위협"에 해당할 때 국제연합에 의한 비군사적·군사적 제재조치가 국제연합헌장상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김명기, 「4.28 북한 외교부성명에 대한 분석·평가와 향후 대처방향」 63-64쪽>

○ 단기적으로는 대미 평화협정 반대 및 군정위 기능회복에 노력하며 북한의 의도를 사전 봉쇄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군 독자능력을 배양하며 남북간 평화협정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주현, 「미·북간 평화체제 전환 논의와 관련한 군정위 위상변화 전망」 105-106쪽>

○ 정부는 북한의 휴전협정 무력화 움직임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성급하게 반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함.

- 특히 북한의 의도는 휴전체제를 실제로 와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전기구를 공전시켜 대미 평화협정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것인 만큼 휴전체제 와해의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음.

- 또 북한의 의도가 대미 평화협정 공세에 있는 만큼, 우리가 휴전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건설적인 제안을 한다고 해도 성사될 가능성은 없으며 소모적 논쟁에 그칠 것으로 보임.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 문제점과 대책」 14쪽(『주요국제문제분석』 '94.10.19)>

o 국가간의 관계개선은 안보적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신의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논리로 미·북 관계개선의 진전은 현안이 핵문제뿐만 아니라 정전체제의 원상회복과 연계하고, 정전체제의 파기 및 미·북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한 평화체제의 도래가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 이에 대하여 미국과 공동보조

o 국제공조체제에 의한 대북 압력 가중

- 우방국의 대북 경협시 한반도 안정의 물증과 국제협약 이행의 담보로서 군사정전위 재가동을 요구하도록 협조

o 군사정전위 재가동의 논리적 정당성 및 북한의 협정위반에 대한 대북 및 대외 홍보 강화

- 군사정전위는 현행 정전체제하에서 한·미와 북한간의 군사적 분규를 조정하도록 국제적으로 규정된 유일한 기구(정전협정에 명시)

- 기본합의서에도 「현행 정전상태의 안정적 유지」가 기본정신으로 명시된 이상, 동 위원회의 참여거부는 기본합의서의 규정

위반

-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안보관광의 정책적인 확대

○ 북한측 불참으로 인한 군사정전위 공전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

- 북한의 복귀에 대한 국제여론 조성

- 본 대안은 민감한 사안으로 심층 연구가 필요

○ 「정전체제의 엄존」원칙 준수 및 의연한 대처

-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안은 군정위로만 해결

  · 「홀 준위」 사건의 해결방식 지양
  · 적극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긴요한 사안 발굴

- 남북경협 확대시 육로를 통한 물자교역은 정전위 규정에 의거 처리

- 남북한 경제인을 포함 각계 인사의 판문점 통과 규정을 신중히 검토

-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군사공동위의 기능중 군사정전위와 중복되는 기능(예 : 우발사태 발생시 상호 협의·해결)의 잠정 유보

  ·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의지 명시적 포기 선언
  · 이에 상응하는 북한 헌법, 노동당 규약 등 해당조항 수정·삭제
  ·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제반 군사협상 채널의 정상가동

· 공세전력의 후방배치, 감축을 포함하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및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 실현
· 정치, 경제, 문화, 인도적 측면의 교류협력 정상화

o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대남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임. 북한의 시대 착오적인 환상을 깨뜨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국방태세의 획기적인 개선 및 한·미동맹체제 과시로 실질적으로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을 느껴야 정전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임.

· T/S의 연례적 실시(최소한 매년 계획 후 융통성 있게 실시)
· 북한의 핵의혹 해소시까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재천명

- 국민의 확고한 안보의식 및 단호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북제의

· 공세적 군사력에 대한 감축(강력한 시찰·검증이 필수)
· 통일과정상의 문제점 발굴을 위한 평화지대·시범적 평화공존 지대 설정

o 북한의 전술적인 공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판을 벌여주고 아측의 여론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은 조치로 한정

- 판문점대표부 설치가 정전협정 61항(쌍방사령관의 합의후 수정 및 증보) 및 62항(명확한 교체시까지 효력계속)의 위반임을 공식적으로 엄중히 경고

- 한·미양국이 판문점대표부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

- 북한의 예상되는 무력화 조치 유형에 대한 한·미간의 대응책 강구 및 초기 제압 <문광건, 「북한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주장 관련, 정전체제 관리방안」 9-13쪽>

○ 전략적 공세주의란 우리정부가 외교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의 성격과 방향을 조정하려는 공격적 정책 노력이라 정의내릴 수 있음.

- 종래와 같은 수세적 방어주의 또는 즉흥적 대응주의로는 외교적 난국을 극복할 수 없음.

-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근거로 하여 북한측의 의표를 찌르는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전략적 공세주의가 한국외교의 지침으로 등장해야 할 것임.

○ 전략적 공세주의의 제일원칙은 북·미 평화협정의 저지에 있음.

- 북·미 평화협정의 저지와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갈등관리를 위해 한국정부는 휴전협정의 일방적 파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

- 여기서 휴전협정의 일방적 파기라 함은 유엔군사령부 및 정전위의 해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유엔사 성격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함.

- 이 경우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정전협정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란 맥락에서 정당화되어 짐.

○ 휴전협정의 일방적 파기는 북·미 평화협정이 한국정부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데서도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음.

- 물론 휴전협정의 일방적 파기를 축으로 하는 전략적 공세주의는 국내외적 여건으로 보아 그리 쉬운 정책적 대안이 아님.

- 그러나 그동안 제한적이나마 한반도에 전략적 안정이 유지되어 왔던 것은 휴전협정체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남북한간의 군사억제력 때문이었음.

- 이제 법률적인 형식논리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가 왔다고 보여짐. 이 같은 맥락에서도 전략적 공세주의는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 하겠음. <문정인, 「국제질서 개편과 남북관계의 재평가 - 전략적 공세주의를 위한 제언」 56쪽>

○ 미·북한 장군급 접촉은 분단체제 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됨.

- 즉, 정전체제 유지라는 전제가 유지되는 한 미·북한 장군 접촉은 비무장지대의 긴장조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비무장지대 긴장유발 가능성에 대비하며 나아가 비무장지대의 긴장완화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비무장지대에서의 우리측이 북한에게 빌미를 줄만한 일체의 행동을 자제함.

- 비무장지대의 긴장완화책의 하나로 이 지역을 관광단지로 남북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금강산-설악산 연계 관광특구, 비무장지대 특정지역 관광단지화

등을 제안함.

o 정전체제의 변화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모든 주체중의 하나가 한국이며 한국과 협의없는 어떤 북한의 조치도 무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표명

o 북한이 기존의 정전체제를 준수한다면 북·미 관계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음. <이종석, 「북한의 5.3성명 관련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주장에 대한 대처방안」 8-9쪽>

o 북한은 앞으로도 정전협정체제의 무실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우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도발과 긴장을 야기하여 우리와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리라고 예상함.

- 이에 대해 첫째, 군사적 긴장 유발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되 군사적 충돌로 발전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등 우회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음.

- 둘째, 우리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자초한 군정위와 중립국감독위의 기능마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됨. 정전협정체제가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과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조정·해결하는 기능을 해 온 이상 우리와 미국은 동 기능의 일방적인 지속을 통해 북한이 노리는 어떠한 빌미도 허용해서는 안됨.

- 정전협정체제상의 군사정전위는 남북간 분쟁해결장치로서 군사분계선과 관련한 남북한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구로서 기능해야 하며,

-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상의 남북군사공동위는 남북한간 구체적인 신뢰구축과 군축을 실현하여 구조적인 군사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각각 수행해 나가야 함. <윤진표,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에 따른 군사분계선 관리 및 대응방안」 16-17쪽>

○ 정부는 북한의 신정권이 등장하고 북한이 기본 군사정책을 변화시킬 기미를 보일 때까지 북한의 냉전체제 무실화 책동과 대미 평화협정 공세에 대해서 조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음.

-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면서 군사정전위 대표로 계속 한국장성을 고수하는 한편,

- 한국측은 한·미 군사동맹체제를 한국 중심으로 바꾸어 가는 문제를 가속화해 나가야 함. <한용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13쪽>

○ 분단 40여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온 것은 한·미 양국의 억지력이지 정전협정과 정전기구 그 자체는 아님.

- 마비된 정전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한·미 양국의 억지력에 손을 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선택이 아닐 수 없음. <백진현, 「남북한 평화체제 전환대책」 30쪽>

○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정전협정의 유지·준수원칙」에 따라 군사정전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추진함.

- 첫째, 한국은 당분간 유엔사와의 협조하에 북한에 대해 군정위 소집을 요구함. 이와 관련, 북한의 군사정전위 철수와 휴전협정 무력화 시도가 휴전협정(61항, 62항), 기본합의서(5조), 화해부속합의서(19조, 20조) 위반임을 엄중히 항의하고 준수를 촉구함.

- 둘째, 유엔사와의 협조를 통해 북한의 대미 직접 군사접촉 기도를 저지함.

- 셋째, 북한측의 정전협정 및 군사정전위 무실화 기도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력과 설득을 병행함으로써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유도함. 특히 미국 등 참전 16개국과 중립국감독위원회 3개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을 통한 대북 영향력 행사도 모색함.

o 특히 북한이 군사정전위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다음과 같은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 동 대표부 해체를 요구해야 함.

- 첫째,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라는 기구는 정전협정은 물론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기구임.

- 둘째, 북한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기존의 군사정전위를 이 기구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바 없기 때문에,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군사정전위를 대체하는 합법기구가 될 수 없음.

o 만일 군사정전위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려면

- 먼저 군사정전위를 개최하여 현 정전협정체제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기초 위에서,

- 쌍방 사령관에게 동 문제에 관한 회담 개최를 건의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쌍방 사령관의 회의와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구를 창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라 할 것임.

- 그러나 정전관리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는 마땅히 남북한이 기합의한 바 있는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전협정 사문화 기도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 정전기구 정상화를 적극 촉구하는 등 원칙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되며,

- 궁극적으로 휴전체제 정상화보다는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14-119쪽>

○ 정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이것은 전쟁억지차원의 문제임. 정전상태의 파기는 곧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임.

- 전쟁은 세력균형이 파괴되었을 때 일어남. 정전상태는 정전협정에 의해서 유지됨.

○ 남·북간에 최소한도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은 북한보다도 상대적 우위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힘의 요소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1) 군사적 요소로서 한·미 군사동맹체제(한·미공동방위체제)임. 정전협정체제의 전쟁억지 기능은 한·미공동방위체제에 의해서 달성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음.
(2) 한국의 경제력임. 어떠한 군사력이나 정치력도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는 지속되기 어려움.
(3)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 및 사회적으로 체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함.

- 이 세가지 국력의 요소를 계속 강화시켜 북한보다도 상대적 우위를 지켜 나간다면, 아무리 남침기회를 찾는다 하더라도 결단코 북한에 기회를 주지는 않게 될 것임.

○ 정전상태가 확실하게 세력균형 논리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한, 북한의 사소한 도발이나 우발적인 충돌은 크게 문제삼을 것이 못됨. 따라서 이와 같은 정전상태하에서 위기관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 군정위에서는 쌍방간에 대화와 접촉통로를 유지하면서,
(2) 군 작전 부대에서는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황원탁,「현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대책」29-30쪽>

○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에 대해 초조해 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되며 의연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함.

- 사실 지난 40여년 동안 정전협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임.

- 현재의 국제환경은 북한의 대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위를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고, 한반도의 주변환경 및 동북아의 안보구조가 안정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불안한 평화를 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것임.

- 또한 KEDO를 통한 대북 경수로 지원,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및 북·미관계 진전 등도 북한의 행동범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힘의 우위를 과시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기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 우리 사회 내의 국론분열을 방지하여야 함.

○ 정부는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현 정전협정체제가 존속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동 체제의 존속을 국제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전략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현 정전협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정전위 개최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스위스·스웨덴 대표와 공산측 대표인 폴란드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경고·촉구하는 동시에, 남북한이 직접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모색하도록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도록 해야 함.

- 단, 유엔차원의 집단적 제재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제성호,「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59-62쪽>

○ 한반도의 정전상태는 정전협정이 아니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전쟁억지력과 이에 토대를 둔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형에 의하여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음.

- 우리가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오늘까지 평화를 지켜 준 전쟁억지력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존재한다는 것임.

- 따라서 이미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실효상태가 지속되어 온 정전체제가 더 이상 마비된다고 해서 우리 사이에서 '공황'이 일어나서는 안됨.

- 우리에게서 '공황'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의 대처가 의연할 때 구속력이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정전체제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보다 큰 불안감을 갖게 되는 쪽은 당연히 북한일 수밖에 없음. <이동복,「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상전략」124쪽>

○ 유엔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는 유엔 헌장 제39조의 '평화에 대한 위협'에 해당됨.

- 따라서 유엔사가 이를 안보리에 즉시 보고해, 안보리로 하여금 북한이 조속히 군사정전위원회로 복귀, 정전협정 정상화에 협조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잠정조치를 유도해야 함.

- 다음으로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안보리의 경고를 담은 결의를 외교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음. <이장희,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16쪽>

○ 우리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킨 결과를 놓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됨.

- 국제법적 성격을 갖는 정전협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하고 비무장지대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북한의 무법자적 행동에 대해 한·미양국 주도하에 힘의 논리로서 직접 대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함. <남만권,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의 접근방안」 11쪽>

○ 한반도 평화를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는 정전협정이 아니라 한·미 군사력의 대북 억지력임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행위에 대비한 한·미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한·미의 대북 정보수집활동 강화

- 북한의 군사분계선 월경행동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한 사전 경고

- 서해 5도 부근의 경계, 정찰활동 강화 <김용호, 「최근 북한의 DMZ불인정선언과 대미잠정협정 체결 공세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응

방안」 13쪽>

o 우발적 군사충돌을 회피하여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의 안정적 상태 유지

o 북한군의 고의적 군사도발시 외교적·군사적 대응

o 미국의 단독적 대북협상을 막기 위하여 미국과의 긴밀한 대응태세 구축

- 북·미 미사일 회담, 유해송환회담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다루지 않도록 요구

o 북한이 별다른 무력시위 없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외교적 조치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나, "4자회담"을 거부하고 정전협정의 폐기 선언과 휴전선일대 군사력 강화시 한국의 대응책은

-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상응한 군사력을 전방에 배치

- 유엔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위기사태에 대한 공동대응전략 수립

- 우발적 충돌 방지

- 외교적 고립으로 북한이 최후의 선택으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전비태세 확립 <김계동,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책동 관련, 군사적 도발유형(시나리오)과 정전체제 관리문제」 24, 26-27쪽>

o 비무장지대에 군사정전위를 대신하는 UN 평화유지군(PKO)의 주둔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정전체제상 군사정전위가 완전 기능을 상실한 이 시점에 비무장지대 관리에 대한 이러한 공백은 더 이상 오래 방치할 수 없음.

- 이 경우 PKO의 군대는 미국과 중국으로 구성되는 것이 4자회담 제의에도 맞을 것임.

- 물론 이 PKO 파견에는 우선 남북이 동의하고, 다음으로 UN안보리의 권고결의가 있어야 함.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4자회담의 법제도적 과제와 추진방향」『4자회담의 과제와 추진방향』 21쪽(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통일문제 학술시민포럼 '96.6.5)>

3. 잠정협정 및 중간(우회)조치 문제

가. 북한의 잠정협정 제의 분석

○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시 이룬 미·북 직접대화의 성과를 계속하여 극대화한다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음.

- 미·북 직접대화에서 한국정부를 배제하는데 성공한 북한 지도부는 미·북 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수록 한국정부의 대미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며 그럴수록 북한은 한국과 정치 군사관계에서 정통성을 더욱 확보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북한은 군부와 외교부가 경쟁적으로 대미관계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외교부가 핵카드를 활용하여 대미관계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면 평화협정 문제는 군부의 대미 군사 안보관계 개선의 전용카드임.

- 평화협정 문제가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자 종래의 입장을 일부 수정하여 미국을 설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북한의 군부는 한국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제고시키면서 미국에 대해 한반도의 위기관리체제가 필요함을 증명하고자 함.

- 한편 이번의 주한미군 수용론과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 용인론으로 미국과 북한이 공통적인 안보이익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조야에 대해 미·북한 직접 안보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함. <한용섭, 「북한의 '잠정협정' 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9-11, 13쪽>

○ 미국을 협상에 유도하려는 의도

- 미국이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에는 부정적이나 비무장지대 우발사고 해결 등을 위해 미·북간 군사채널의 수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려는 의도

○ 체제생존을 위한 임시변통 자구책

- 남북한 국력의 심각한 차이 속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경제난 등으로 인해 체제위기상태에서 장기간의 협상이 필요한 대미 평화협정보다 잠정협정을 통해 북한의 안보를 위한 임시변통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안보동맹의 와해가 궁극적 목표 <김용호, 「최근 북한의 DMZ불인정선언과 대미잠정협정 체결 공세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안」 5-6쪽>

○ 북한이 과도하게 잠정협정 요구 등 미국과의 정치·군사문제에 치중하는 것은 체제의 정통성이 한국에 있지 않고 자신에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또한 북한 정권이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통해 소위 남조선 해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주민들이 참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임.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한의 대외 정책 변화와 전망」 19쪽 (『통일경제』 '96.5)>

○ 북한은 이미 한국의 반대로 평화협정 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평화협정보다 완화된 잠정협정과 군사공동기구 구성을 미국에 제의하였음.

- 이러한 제의를 하는 북한의 의도는 협정체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됨. <전성훈(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의 핵문제와 재래식 군비통제」『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 28쪽(민족통일연구원·충남대 국내학술대회 '96.9.13)>

○ 북한은 우선적으로 '조·미 상호안보협의체'를 구성하여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를 통한 정전협정체계를 와해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를 변화 또는 약화시키는 것을 제1의 대미 군사적 접근 목표로 삼고 있는 듯함. <정영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79쪽(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10)>

나. 대응방향

○ 남북 평화협정 체결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중간조치를 모색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북·미 불가침협정과 한·중 불가침협정 체결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군사정세를 안정화함.

- 특히 북한이 대미 핵협상과정을 활용하여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할 경우, 한·미와의 입장 충돌로 인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북·미 불가침협정 및 한·중 불가침협정 체결은 관련국의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즉 미국은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공세를 우회하는 한편, 기본합의문의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음.

- 중국은 군정위 철수로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음.

- 또한 북한은 대미 관계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북·미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일단 유보함으로써 대미 관계개선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인정·보장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북·미 및 한·중 불가침협정 체결은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우리측의 입장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수용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은 교차불가침협정 체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순차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즉 첫째, 먼저 교차불가침협정 체결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를 도출함.

- 둘째, 교차불가침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중국측에 설명, 중국의 협조·지원을 확보함.

- 셋째, 미·중의 대 북한 설득을 통해 교차불가침협정 체결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함. 이와 관련, 필요시 대 북한 설득을 위한 일·러의 협조를 요청함.

○ 교차불가침협정 체결시 북·미 불가침협정 및 한·중 불가침협정에는 전쟁예방 또는 불가침에 관한 내용, 즉 상호 불가침 및 무력행사의 폐기, 주권 존중 및 내정불간섭,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자간 핫라인 설치,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공동 노력, 일방이 제3국과 기체결한 조약의 존중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북·미 불가침협정은 평화협정과 달리 북·미간의 불가침을 약속하는 것일 뿐인 바, 법리상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불가침협정의 내용에 전쟁종결 및 평화상태 회복,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유엔군사령부 해체, 미군철수 또는 감축 등 불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치·군사적 문제가 명시되어서는 안됨.

- 특히 북한이 북·미 불가침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분식·선전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북·미 불가침협정이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21-123쪽>

Ⅴ.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 4자회담 제의 배경

○ 한반도 평화에 관한 기존입장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상황변화를 감안한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구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4자회담 제안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임.

- 4자회담 구상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것으로서, 4자회담 제안이 과연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임에는 틀림없음.

○ 한·미양국은 4자회담 제안을 통해 일단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책동을 저지하고 이로 인해 조성된 긴장국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미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와 미·북관계 개선을 분리함으로써 한·미관계의 분열을 노리는 북한의 의도를 차단함과 동시에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간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였음. <백진현,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4쪽>

○ 한국 정부의 4자회담 제의는 한국을 배제하면서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갖는 평화적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과의 양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관철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대해 능동적·현실적으로 대처하면서, 포괄적 틀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장기적 차원의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음. <박영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 방향」 38

쪽(『통일경제』 '96.5)>

○ 클린턴·김영삼 대통령의 4자회담 제의는 미행정부의 입장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무방함.

- 이는 정전협정을 대신하여, 남한을 배제한 채 미·북간 쌍무평화협정회담을 열 것을 요구해 온 북한의 노력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취한 최초의 외교적 대응임을 말해 줌.

- 4자회담 제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결속을 시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레리 닉시(Larry A. Niksch, 미의회조사국 연구원), 「미·북관계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6쪽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 한반도정책』(민족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96.5.17)>

○ 북한의 대미 평화공세와 정전체제 무력화 책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임.

- 즉 한·미 양국이 북한을 4자회담의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여 최근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공세와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를 차단시키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수립하려는 것임.

○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여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시도임. <김용호(외교안보연구원 교수), 「4자회담 제의의 배경과 전망 및 과제」 『한반도와 동북아 4강관계』 78~79쪽(외교안보연구원·경북대 세미나 '96.6)>

○ 2+2방식 보다는 4자회담방식이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보

다 많을 현실적 방안인데, 바로 이러한 현실적 이유가 4자 회담이라는 회담방식을 제안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임. <노동일(경북대 교수), 「한반도 4자회담과 동북아 질서」『한반도와 동북아 4강관계』 94쪽(외교안보연구원·경북대 세미나 '96.6)>

○ 정부의 4자회담 제의에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단독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북한의 기도 및 전쟁불사위험, 그리고 미·북한 고위장성급 접촉 가능성 등 긴박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략을 바꾸어 한반도 평화문제의 주도권을 쥐려는 현실적인 의도를 담고 있음. <정종문(동아일보 논설실장), 「4자회담의 성공 전략」 24쪽(『한국발전』 96 여름)>

○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와 함께 4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은 형해화되어가는 한·미공조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4자회담이라는 틀은 그것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관계 진전을 하나의 틀 속에 연계지우는 틀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한국정부는 주목했던 것임. <이삼성(한림대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하여」 3쪽(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96 평화·통일 민족대토론회 '96.7.19)>

○ 4자회담은 한국정부가 북한의 한반도문제 해결방식, 즉 한국배제와 북·미 대화구도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차단할 필요를 인지한데서 비롯되었음.

- 정부는 북·미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겠다는 전략에서 4자

회담을 제의한 것임.

○ 동북아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4자회담을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의 구성에 대한 정부의 남북한문제의 당사자해결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즉 항구적 평화구축 과정에 외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전환을 의미함.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그 성격상 외세 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를 국제문제화하여 주변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계산임.

○ 4자회담 제의는 정부의 대 북한 통일정책을 다자적 협의 형식을 빌어 수세적 대북 정책으로부터 공세적 대북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를 저지하고 북·미간의 평화협정체결을 기도하는 북한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대응방안이 4자회담임.

- 정부로서는 생색만 내는 미국과 간단없는 북한의 공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여 미국의 북한의존 전략을 상쇄함과 동시에

- 4자회담이란 다자간 국제협의체를 구성함으로 해서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한국배제 전략이란 공세적 연결고리를 끊고 북한과 미국을 한국이 주도하는 회담장안으로 끌어들이는 정부가 주도권을 쥔 공세적 전략을 마련한 것임. <김광열(배제대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 145-148쪽(민족통일연구원·충남대 국내학술대회 '96.9.13)>

○ 4자회담 제의의 본 뜻은 북한의 남한배제전략을 저지하고, 당사자해결 원칙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한국전에 직접적 개입국가인 중국과 미국을 참여시켜,

- 남북당사자간의 평화협정 체결과정과 그 결과를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차선의 선택으로 제의된 것으로 분석됨. <최영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 4자회담을 중심으로」 114쪽>

2. 북한 및 주변국의 예상태도

가. 북한

○ 북한으로서는 평화협정 체결주장이 그들의 생존전략은 물론 전통적인 대남전략, 나아가 북·미간 협상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효용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 정작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보다는 상당한 기간동안 이 카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를 보려할 가능성이 높음. <제성호, 「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체제 전환문제」 159쪽>

○ 북한은 한·미간에 합의한 "4자회담"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

- 미국과 직접협상을 도모하여 한국을 배제시키려는 전략에 배치

- 명분과 자존심을 중시하는 북한의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여 4자회담 수용 불가능

- 북한의 극단적 조치에 대한 중국의 견제로 중국에 대한 신뢰도 의심

○ 일단 "4자회담"을 거부하고, 치밀한 전략하에 "벼랑끝 외교"를 활용하여 장기전으로 돌입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북한은 당분간 더 이상의 무력시위는 유보할 것임.

- 북한이 판문점 무장병력 투입으로 정전협정의 무력화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성공하였고,

- 조만간 진행될 미국과의 미사일·유해송환협상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 이상 호전적 정책이 불필요하고,

- 더 이상 긴장을 조성할 경우 식량지원과 경수로 지원사업 등에서 차질이 올 것으로 생각 <김계동,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 책동 관련, 군사적 도발유형(시나리오)과 정전체제 관리문제」 18쪽>

o 북한은 4자회담 제안을 거부하기 보다는 일단 수용한 후 4자회담을 미·북회담과 남북회담으로 이원화하고 남북회담은 형식적으로 임하면서 미·북회담을 통해 양측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보구조의 수정을 꾀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음.

- 이미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북한과의 어떠한 직접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천명한 이상,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전략을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4자회담의 틀내에서 변형된 형태의 미·북접촉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백진현,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쪽>

o 당사자 원칙의 수정이라는 남한의 입장 변경은 분단체제의 대 서방 카드로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통해 분단체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켜온 북한에게 협상 압박용이 될 것임. <이종석, 「4자회담과 향후 남북 관계」 9쪽(『통일경제』 '96.5)>

o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은 이번 '4자회담' 제의에 대해 거부, 수용, 수정제의, 수용 지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음.

- 북·미 관계개선에 집착하는 북한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거부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그러나 북한은 '4자회담'을 수용하면서도 북·미 직접협상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한편, '4자회담'을 형식화시키면서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직접협상을 지속하려 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북한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4자회담'을 결렬시켜 버리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임. <안인해(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중미 관계를 통해 본 남북관계」 77쪽(『통일경제』 '96.5)>

○ 북한은 4자회담을 즉각 거부하기보다는 일단 수용한 후, 4자회담의 틀 내에서 한국배제-대미접촉의 구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음.

- 대미 관계개선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으로서 미국이 관여한 새로운 제안을 즉각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 4자회담을 통해 대미 직접협상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임.

- 따라서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바라듯이 남북한간 평화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음.

- 오히려 북한은 4자회담을 남북-북·미회담으로 2원화하고 남북회담은 형식적으로 응하면서 미·북회담을 통해 양측 관계개선과 한반도 안보구조의 수정을 노리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큼.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4자회담과 한국의 과제」 5쪽(『정세와 정책』 2호 '96.5.25)>

○ 북한으로서는 4자회담에 응하지 않는다 해도 체제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평화체제 문제를 제외하고는 미·일과의 관계개선 여지가 넓어져 북한은 4자회담 제안 자체로 이미 득을 보고 있음.

○ 북한이 4자회담 제의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4자회담을 수용하지 않고도 대미 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됨.

- 현재 진행 중인 북·미간 제반 현안 협상의 진전에 따른 미국의 대북 관계설정을 가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이 경우 4자회담 제안은 앞으로 상당기간 제안으로서만 남을 가능성이 큼. <오삼교(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4자회담과 한미의 대북 전략」 45쪽(『통일경제』 '96.6)>

○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채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는 식량문제의 인도적 성격에 따라 동정적인 여론을 업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요인은 북한이 쉽게 4자회담을 수용하기 보다는, 최대한으로 4자회담을 지연시켜 기대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음.

○ 결국 4자회담 성사가능성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북한이 한·미의 4자회담 제의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즉 북한은 회담 참여를 위해 장기적인 시간을 확보하려 하

는 가운데 기대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받기 원할 것이며,

- 한국,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 회담 수용의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 회담내용을 수정한 변형된 형태의 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여짐. <김도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4자회담 제의 배경과 문제점」 7-8쪽(극동문제연구소 제5차 통일전략포럼 '96.6.14)>

○ 북한이 4자회담 수용여부에 대해서 양면적 반응을 보이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계속 늦추고 있는 것은

- 4자회담의 득실에 대한 내부적 입장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나

- 아니면, 내부적 입장정리는 대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때문일 것임. <노동일, 「한반도 4자회담과 동북아 질서」 109쪽>

○ 북한의 4자회담 수용을 결정 짓는 핵심변수는 북한의 경제난의 정도와 4자회담을 회피하면서도 생존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음. <이종석, 「4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과 전략 예상」 10쪽>

○ 북한은 한편으로 경수로 합의이행과 미사일회담 등을 통해 북·미간의 독립적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개방의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모색하면서

- 다른 한편으로는 4자회담 수용의 전제로서 그 운영방식에 대한 정치적 조건에 관한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

- 다시 말해서 4자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에 북·미관계 개선을 구속시키는 틀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장할 일정한 정치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은 4자회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임. <이삼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하여」 4쪽>

○ 4자회담이 4-2(남북한) 형태, 즉 4자의 틀 속에서 종래 주장대로 한국정부가 남북당사자 원칙을 고수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 그렇지만 향후 4자가 한 자리에 모여 의제에 관하여 협의하게 될 때, 만약 한·미양국이 4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미평화협상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게 되면 북한은 4자회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짐. <곽태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4자간 평화협정 : 한반도 평호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김정일의 북한'과 한국의 선택』 173쪽(서울신문 국제포럼 '96.10.18)>

○ 식량 및 에너지·외화의 심각한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한층 개선하고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며 국제적인 식량지원을 얻고 한국을 포함한 외부로부터 자본 및 기술 도입 등을 위해 4자회담 제의를 쉽게 거절하기 힘들겠지만

- 다른 한편에서 보면 자신들의 안보구상의 중심을 이루는

미·북 평화협정을 포기하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임. <마사오 오코노기(Masao Okonogi, 일본 게이오대 교수),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김정일의 북한'과 한국의 선택』 263-264쪽(서울신문 국제포럼 '96.10.18)>

○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4자회담을 북한이 전면적으로 수용하려면 그들의 "하나의 조선"논리와 "실제적 당사자" 주장, 특히 공산독재체제의 유지와 적화통일노선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든가 포기하여야 할 것임.

- 그런데 강경·보수적인 김정일정권이 존속하는 한 북한이 이러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가능성도 많지 않음.

- 북한은 미국의 제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임.

- 북한이 4자회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철수같은 미국이나 특히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많음.

○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4자회담을 수용하면서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문제는 "실제적 당사자들"인 미국과 북한간에 논의하고 남북한간에는 그들이 해묵은 주장을 되풀이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는 남북회담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4자회담을 미·북한회담으로 변질시키려 할 가능성이 많음. <전정환(국방대학원 교수), 「4자회담 제의와 북한의 반응」『김정일체제하의 북한』 55-57쪽(북한연구소 창립25주년기념 학술회의 '96.11.6)>

o 북한이 4자회담을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 첫째, 4자회담을 즉각 거부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정치·경제적 불이익이 즉각 나타날 것이라는 실리적인 판단일 것이며,

- 둘째, 4자회담을 역이용하여 몇가지 조건을 덧붙여 역제의를 함으로써 한·미 양국으로부터 양보나 지원을 획득하고 이에 따르는 한·미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음.

o 4자회담을 수용할 경우도 결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제조건을 요구하거나 변형된 회담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큼.

- 예컨대 실질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중심이 되고 남한과 중국은 옵서버 역할을 하는 회담으로 변질시키면서 미국과는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고 남한과는 불가침합의 이행 문제만 논의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 여기서 미·북 평화협정이 한국의 이해를 유도하게 되면 주한미군을 인정하는 흥정거리도 상정할 수 있음.

- 더 나아가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T/S 폐지, 한·미연합사의 기능 약화 등도 요구할 수 있고,

- 이러한 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제의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 <최영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 4자회담을 중심으로」 113-114쪽>

나. 미국

○ 미행정부는 만약 중국이 한반도 4자 평화회담을 공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아마도 그러하리라 예상되는데), 4자회담을 실현하기 위한 뚜렷한 외교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국측의 제안에 미국이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4자회담을 위한 광범한 국제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미국이 기꺼이 전개할 것인가는 매우 의심스러움. <레리 닉시, 「미·북관계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16쪽>

○ 북한의 추후 대미 평화협정 체결공세는 4자회담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촉구함으로써 계속 차단시켜 나간다는 전략임.

○ 4자회담의 성사여부와는 별도로 미국은 미·북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에 대한 의도를 잘 활용하려고 하고 있음.

- 따라서 미·북한 접촉 채널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의 유해송환이나 미사일 협상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당분간은

거기에 안주할 것으로 예상됨.

o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4자회담 수용과 미·북 관계개선을 연계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그간의 대북 외교성과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됨.

- 4자회담에 대해 너무 무관심을 보여도 북한에게 거부의 빌미를 주게되고 제안자인 한국과 관계가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선언적 개입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이것은 중·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뜩이나 소원해진 중·미관계에 4자회담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대중국 설득 문제는 한국에 전적으로 맡길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북한에 대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하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북한을 4자회담으로 유인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면서 한국·일본의 적극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보여짐.

o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미행정부는 1997년부터 4자회담에 적극적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평화협상에 대한 업적은 다대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으므로 한반도에서 평화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 전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됨.
<한용섭(국방대학원 교수), 「미국의 4자회담에 관한 입장과 예상 전략」 19, 21-22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7.4)>

○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문제와 북·미 관계개선을 분리시킴으로써 한·미간의 갈등요인을 제거시킬 수 있음.

- 그 결과 한국정부의 우려를 불식시켜 대 북한정책에 관련하여 표면적으로 한·미 공조체제의 복원과 동시에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듯함.

○ 4자회담과 관련하여 득실을 가늠하여 볼 때 미국은 외교적 위험부담보다는 실리가 크다는 판단을 했을 것임.

- 즉 미국은 4자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인 미국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북한에게는 명분을 주고

- 한국정부에게는 평화협정 논의구조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줌으로써 한국정부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낸 것임. <김광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52-154쪽>

○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핵확산 방지정책에 전면 저촉되는 것이므로 북한을 포용하면서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한편, 「4자회담」을 통하여 한반도내 긴장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음. <민족통일연구원,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25-26쪽(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10)>

다. 중국

○ '4자회담' 제의에 대해 신중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일차적으로 남북한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는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려는 북한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북한체제의 붕괴 등 한반도에서의 급속한 현상변화가 자국에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북한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할 것임. <안인해, 「중미 관계를 통해 본 남북관계」 77쪽>

○ 북경의 공식적 입장은 관련 당사국들, 즉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등이 다자회담에 앞서 양자적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임.

- 분명히 중국은 다자회담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양자적 관계를 선호하고 있음. <안병준(연세대 교수), 「주변 4국과 남북한 : 동아시아 안정의 시험대」 6쪽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 한반도 정책』 (민족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96.5.17)>

○ 한국 정부는 중국이 4자회담 성사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 4자회담에 중국이 참여한데 대해 북한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의 성사를 위해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 다만 지금까지의 북·중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조용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갈 것으로 보임. <노동일, 「한반도 4자회담과 동북아 질서」 110-111쪽>

○ 중국은 남북한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 남북한과 중, 미가 함께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제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임.

- 중국은 4자회담 제의가 남북한의 주장을 절충하고 있으며 중국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4자회담이 실질적으로는 「4-2」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4자회담에 대해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미간의 대립구도하에서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와 중국의 영향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서 공개적 지지 입장을 보일 경우, 이는 북한과의 관계 악화와 대북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때까지 4자회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임. <신상진(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7-8쪽 (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6.27)>

○ 중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의사를 천명하거나 구체적인 역할을 언급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남북한으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 중국은 우선 4자회담에 대한 여건과 분위기가 성숙되는 것을 기다린 다음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양측으로부터 호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중국으로서는 4자회담은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중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중국 배제의 북한의 독자노선에 대한 견제라는 점에서, 또한 현실적인 평화 정착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경우 적극 지지·참여할 것이나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영향력 행사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 북한 유화책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금희연(서울시립대 교수), 「중국의 대 한반도 시각 변화와 4자회담」 74-75쪽(『통일

경제』 '96.8)>

○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고 한반도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중국이 회담 참여국가로 포함된 4자회담의 성격과 그들의 입장이 일치하는 상황하에서 4자회담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임.

○ 중국은 북한이 우선하여 4자회담에 임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물론 중국이 4자회담에 대해 지지하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대외적인 선언에 불과할 뿐이며

- 북한에게 외교적 압력을 가하거나 북한의 저항을 불러 일으켜 가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으리라 예상됨.

- 4자회담에 원칙적인 찬성을 공식화하는 외교적 입장과 북한이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확인되어 회담개최의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 중국의 자세는 관망의 자세를 계속 견지하리라 예상됨.

○ 중국은 회담이 진행될 경우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가 갖는 성격과 내용이 중국의 안보와 동북아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국가이익의 최대화라는 중국의 입장으로 보아 적극적 자세로 임할 것으로 예상됨.

○ 4자회담이 북한의 거부로 회의성사 자체가 결렬되었을 경우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북·미의 양자회담이나 또는 북한, 미국, 중국만이 참여하는 회의는

- 한국의 참여 속에 한반도문제 해결이란 종래의 중국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며 평화체제효력의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일본과 러시아를 참여시킨 6자회담의 회의체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남북한 양쪽 모두 반대하는 현상황아래서 중국이 회담주체의 성격을 주도하는 입장에 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김광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56, 158-159쪽>

○ 4자회담 문제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중국은 외면상 4자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음.

- 그렇지만 그들이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참여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강화의 계기로 생각하고 있음은 분명하며, 그런 점에서 중국은 4자회담에 대한 '암묵적 지지자'라 할 수 있음. <정해구(한신대 강사), 「4자회담과 남북대화 전개 전망」 8쪽(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96.10.17)>

○ 중국정부는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평화구조가 자리잡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당사국들이 그러한 평화구조의 형태에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음.

- 중국정부는 또한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서명국가로서 기꺼이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조 구축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음. <夏道生(Xia Daosheng, 중국 인민외교학회부회장),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정착을 위한 실현가능한 방안들」 『'김정일

의 북한'과 한국의 선택』 244쪽(서울신문 국제포럼 '96.10.18)>

○ 개혁·개방을 국가의 최우선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의 유지를 필요로 하고 있고

- 따라서 원칙적으로 4자회담을 지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는 남북한이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 북한의 참여를 전제로 회담에 참가한다는 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전정환, 「4자회담 제의와 북한의 반응」 57쪽>

○ 중국은 4자회담 건의에 대해 『이해』를 한다고 표명하였음.

- 중국은 앞으로도 남북화해를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또한 통일의 과정을 단축시키는데 있어서 응분의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함. <金景一·陣峰君(북경대 교수), 「한반도통일에 대한 분석 및 중국의 정책에 대한 사고」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64쪽(전남대·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96.11.29)>

라. 러시아

○ 러시아는 남북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동북아 4강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남북한 양 당사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4강이 함께 참여해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 러시아의 불만은 앞으로 한국을 여러모로 불편하게 할 것이지만 러시아가 4자회담의 진행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노동일, 「한반도 4자회담과 동북아 질서」 112쪽>

○ 러시아는 그동안 '한국 일변도 정책'이 한반도에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자국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 4자회담에서 자신이 철저히 배제되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이해 당사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북 관계를 회복하고 있음. <금희연, 「중국의 대 한반도 시각 변화와 4자회담」 71쪽>

○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입장은 4자회담이라는 형식에 반대하고 있을 뿐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러시아의 안보와 국익에도 도움을 가져다 준다고 판단하고 이를 환영하고 있음.

- 러시아로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여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에 일정지분 역할과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동북아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대등한 입장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러시아는 4자회담이 아닌 러시아가 포함된 어떤 형식의 협의체(6자회담 또는 8자회담)에 적극적 찬성을 하리라 예상해 볼 수 있음. <김광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67쪽>

○ 최근 러시아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족주의 추세와 좌파세력의 부상으로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모색하는 한편,

- 자국의 참여를 배제하였다는 이유로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4자회담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등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기도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는 대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 여건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바,

- 당분간 동북아지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임. <민족통일연구원,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25-26쪽>

○ 4자회담은 이 지역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부합되지 않음.

-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6개국 즉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및 남북한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를 소집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블라드미르 루킨 (Vladmir Lukin, 러시아 하원 외무위원장),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양상」 5-6쪽(서울신문 국제포럼 '96.10.18)>

○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로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의 고조나 전쟁의 재발을 원하지 않고

- 따라서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와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반대하고 있고,

-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한간의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통일을 지지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까지 4자회담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데

- 그것은 무엇보다 러시아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임.

○ 러시아는 러시아와 일본 및 UN 등도 참여하는 다자간회의의 개최를 거듭 주장하고 있음. <전정환, 「4자회담 제의와 북한의 반응」『김정일체제하의 북한』 58쪽>

○ 전체적으로 볼 때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부정적임.

- 그것을 "방해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여기지도 않음.

-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 제안자체에 어떤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 '초청되지 못한 이웃'으로서의 불쾌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두 개의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 확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임. <김창진(모스크바대 정치학 박사),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역할」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103쪽(전남대·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96.11.29)>

마. 일본

○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증진을 희망하고 있는데, 4자회담 제의는 이를 위한 대북교섭에 유리한 환경을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4자회담으로 미국이 한반도 평화문제와 미·북 교섭문제를 분리해서 추구한다면, 일본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임. <노동일, 「한반도 4자회담과 동북아 질서」 113쪽>

○ 일본의 동북아정세판은 급격한 역내의 세력변화 보다는 점진적인 세력조정이 일본의 국익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 그런 관점에서 돌출적인 북한의 행동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4자회담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내심 일본은 반겼을 것임.

- 국제적인 논의의 틀 속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일본의 안정을 담보해 주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에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됨.

○ 최근의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선언과 동시에 일련의 군사행동은 일본이 예정했던 북·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임.

- 따라서 4자회담 제의는 긴장국면의 남북한 관계를 벗어나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세변화로 판단했을 것임.

○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 등 직접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형식의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원하고 있지만

- 4자회담의 성격상 일본이 회의참여국이 될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거부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본으로서는

- 차선이나마 4자회담을 내키지 않지만 찬성과 지지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임.

○ 일본은 한국정부가 제안한 4자회담을 지지함으로써 대 북한 공조체제가 건재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 북·일간의 접촉과정에 북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는 한국정부의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 국교협상 과정에 지나친 북한의 요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하에 이루어진 결정임.

- 또한 일본의 군사전략에 대한 남북한의 경계심을 불식시키

고자 하는 의도라고도 판단됨. <김광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60-163쪽>

○ 일본이 4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배경과 이유는

- 첫째,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제의한 4자회담을 반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있고,

- 둘째,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4자회담이 일본의 국가이익과 대 한반도정책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임. <전정환, 「4자회담 제의와 북한의 반응」『김정일체제하의 북한』 58-59쪽>

○ 일본은 4자회담 개최 지지를 일관해서 표명하고 있음.

- 그 이유는 먼저 한반도 문제 해결은 아주 어렵고, 더욱이 일단 그 문제에 관여하게 되면 아주 복잡한 작업이 된다는 것을 일본이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임.

- 그와 동시에 장래 어느 시점에서는 일본의 희망여부와 관계 없이 이른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임.

○ 일·북 정상화교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제안한 4자회담을 북한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불

가결함.

-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의 대 북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수락하지 않는한 일본국민이 일·북 교섭의 재개를 지지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음. <이즈미 하지메(Izumi Hajime,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4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0, 90쪽(전남대·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96.11.29)>

3. 4자회담 성사를 위한 전략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 한반도 정치·군사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안도 모색·강구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경우,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김일성의 유훈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홍보하려 할 것인 바,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큼.

-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대북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반대급부로 북한이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에 호응해 오도록 유도함.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40쪽>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리한 화해 분위기 조성을 대내적으로 남한이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함.

- 북한의 최대 관심은 체제관리에 있으므로 남북의 만남이 그들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고,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말과 행동으로 북한에 보여주어야 함. <이장희,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19쪽>

○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도록 유연한 대북정책 필요

- 북경에서의 제4차 남북접촉 재개 → 경제교류·협력 회담으로 발전

- 4자회담의 예비적 성격으로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제의 → 기본합의서 원칙 준수

o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안 준비 → 남·북한, 유엔군 대표(미국)가 참여하는 "3자회담" <김계동,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책동 관련, 군사적 도발유형(시나리오)과 정전체제 관리문제」 25쪽>

o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제협력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 당사자간에 실무협의를 할 것을 보조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평화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제협력」을 어느 수준까지 선행시켜 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o 회담의 조기실현에 연연하지 말아야 함.

- 우리의 자세 천명만 분명히 해두고 북한이 수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함. <이상우(서강대 교수), 「'4자회담' 실현 접근방안」 5쪽(외교안보연구원 한반도 4자회담의 과제와 접근방향 세미나 '96.5.8)>

o 긴밀한 한·미공조 체제의 견지는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의 요체이며 이는 4자회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결국 한·미공조가 긴밀히 유지될 때에 북한은 그들의 한·미 분열전략이나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전략이 먹혀들어가지 않음을 인정할 것이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데 현재 이 외에 더 효과적인 방안은 없음.

- 또 양국은 4자회담에서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유도해야 함.

- 특히 4자회담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것인 만큼 한국은 한·미공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백진현,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쪽>

○ 4자회담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

-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북한의 변화이며, 변화란 단시일에 오지 않으므로 한·미 양국은 4자회담 제안을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하나의 이니셔티브로 보고 꾸준히 노력해야 함. <백진현, 「4자회담과 한국의 과제」 5쪽>

○ 북한에 대한 유인수단으로서 북한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이익의 규모나 내용이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하며, 한편으로 북한이 참여 거부시 사용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김도태, 「4자회담 제의 배경과 문제점」 8쪽>

○ 우리는 미국이 당근을 미리주는 참여정책에 일단은 제동을 걸어야 함.

- 북한이 4자회담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3국이 추가 식량지원이나 한국의 남북 경제제재 완화, 일본의 일·북회담 재개 등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함. <배한동, 「미국과 일본의 대북수교 전망」 54쪽>

○ 북한의 대남불신을 해소하여 4자회담이든 3자회담이든 남북대화가 실질적 부분을 담당하는 평화회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 4자회담시 한국이 어떻게 건설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임할지에 대하여 몇가지 분명한 원칙을 북한에게 밝혀 약속할 필요가 있음.

- 이것을 남북한과 미국간의 4자회담 설명회라는 예비접촉과정에서 북한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음. <이삼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하여」 7쪽>

○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은 순수하게 군사적 논리로만 풀어 나갈 수는 없음.

- 정치·경제·군사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다른 분야에서 평화체제 전환을 가능케 하는 기반조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문제점」 117쪽>

○ 4자회담이 시작되기에 앞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설명회가 먼저 개최될 것임.

- 3자설명회의 목적이 4자회담의 취지를 북한측에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3자설명회는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첫째, 설명회에 중국을 제외한 3자가 모인다는 사실은 4자회담을 주도할 국가가 남북한과 미국이라는 것을 뜻함.

- 둘째, 4자회담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회담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협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것임. 북한이 4자회담에 성의를 보일 경우, 회담의제와 더불어 협상구도와 절차까지 합의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3자설명회에서 4자회담의 구체적 청사진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전성훈, 「한반도의 핵문제와 재래식 군비통제」 27쪽>

○ 4자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 재개는 일단 남북한에서 이들 강경보수세력의 적대적 상호 의존 및 강화관계의 메카니즘을 약화시키고,

- 이에 대신하는 상호 협력적 의존관계를 강화시키는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과정과 더불어 진행되지 않으면 안됨.

- 동시에 그것은 한반도 주변정세 속에서 점차 형성되고 있는 탈냉전의 긴장완화와 결합되어야 할 것임. <정해구, 「4자회담과 남북대화 전개 전망」 10쪽>

○ 회담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거 평양당국과의 접촉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어느정도 구체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음.

-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제안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지혜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북한이 식량·연료 그리고 다른 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제한된 인도적 원조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 북한지원에 대한 원칙은 너무 많은 원조를 한다든가 너무

자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임. 지나친 지원은 내부개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임. <더글라스 팔(Douglas Paal, 미 아태정책센터 이사장),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김정일의 북한'과 한국의 선택』 216-217쪽(서울신문 국제포럼 '96.10.18)>

4. 4자회담 운영방안

가. 회담형식 및 운영전략

○ 그 어떠한 형태의 회담이 이루어진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되고 주도해야 하며,

- 나머지 관련국은 이를 보장 또는 추인하는 정도의 역할로 국한함으로써

- 민족자존의 원칙이 최대한 확보되면서도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되도록 해야 함. <문성묵(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중령, 정치학 박사), 「주요 평화협정 사례연구 및 한반도 상황에의 적용 가능성」 29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3)>

○ 4자회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지휘부 설치가 필요함.

- 대미협의와 남북회담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하기 위하여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간의 상설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 4자회담에 참여할 요원을 사전에 선정하여 충분한 훈련을 해 두어야 함. <이상우, 「'4자회담' 실현 접근방안」 5쪽>

○ 한·미양국은 북한이 4자회담을 이원화한 후 남북회담을 형식화하는 등 애매모호한 상황을 조성하여 혼선을 야기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충분히 대비해야 함.

- 문제의 본질은 남북한관계의 타결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있어 판단의 기준을 남북관계의 진전여부에 두어야 할 것임.

○ 4자회담은 협정을 통한 문제의 일괄적인 타결보다는 실질적 평화의 점진적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함.

- 합의 자체보다는 합의의 실천을 회담성과에 대한 판단의 준거로 삼아야 함. <백진현,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쪽>

○ 4자의 만남을 연 4회 정도로 정례화 함.

- 만나는 장소는 서울, 평양, 워싱턴, 북경 등 참가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교대로 함.

- 대표수준은 처음에는 외무장관이, 점차 정상으로 격상함. <이장희, 「4자회담의 법제도적 과제와 추진방향」 20쪽>

○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중의 역할 분담과 합의가 회담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 이번 4자회담 제안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서 남북한과 관련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동시해결방식」과 함께 남북한의 평화협상을 우선 추진하는 「분리협상방식」을 결합시킨 것으로

- 미·중이 남북한 협상의 중재자 및 합의사항의 보장자 역할

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김용호, 「4자회담 제의의 배경과 전망 및 과제」 82쪽>

○ 우리는 4자회담 자체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협상 전략과 목표를 분명히하여 이 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임.

- 4자회담과 평화협정은 자칫하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한·미 방위체제 분열을 조장하는 만약의 사태를 특히 경계해야 할 것임. <배한동, 「미국과 일본의 대북수교 전망」 54-55쪽>

○ 4자회담이든 아니면 또다른 형태의 한반도 평화협상이든 한반도의 평화협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동북아에도 유럽의 안보협력협의회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필요함.

- 이러한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나 시도는 그 자체로서 한반도 평화협상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노동일, 「한반도 4자회담과 동북아 질서」 117쪽>

○ 정부의 4자회담 제의 논리는 '4-2'구상으로 압축되어 있음.

- 북한을 한국과의 대화상대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중국 4자의 대표가 처음에는 함께 만나고,

- 4자회동이 이뤄지면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실질토의는 남북한이 직접 추진하며 미국과 중국은 물러서서 회담의 촉진역할만 담당케 한다는 것이 '4-2'구상임. <정종문, 「4자회

담의 성공 전략」 25-26쪽>

○ 미국과 중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하고 실제대화는 남북한간에 이뤄지게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그렇게 되면 의장국들은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예를 들어 북한이 이데올로기적인 선전이나 의제외 발언으로 시간을 끌면 중국과 미국이 이를 제지하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임.

○ 4자회담에는 제1, 제2, 제3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인데,

- 제1위원회는 경제협력위원회,

- 제2위원회는 군비통제위원회로 해서 한반도의 군비통제문제와 평화문제 등을 다룰 수 있음.

- 제3위원회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안을 작성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국제적 보장안을 포함시키고, 당분간 분단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할 기구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은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제2위원회나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는 제1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해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문제를 연계할 수 있을 것임. <한용섭, 「미국의 4자회담에 관한 입장과 예상 전략」 26-27쪽>

○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네 나라 사이에 여러 가지 수준의

양자협의들(bilateral talks)이 허용되어야 함.

- 물론 북·미협상과 남북협상이 그처럼 동시적이면서도 독립적으로 전개될 양자협의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것이며

- 그 두가지의 양자협의의 내용을 일정하게 조율할 매개로서 한·미협의 및 북중회담이 각각 조정과 윤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북·미협상과 남북협상에서 일정하게 실질적인 내용들이 비공식적 수준에서 타결되면,

- 4자회담의 당사자들인 네 나라가 다같이 한 협상테이블에 모여서 평화협정을 체택할 수 있게 될 것임. <이삼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하여」 12쪽>

○ 3자설명회 이후 남북한과 중·미가 참여하는 4자회담이 다음과 같은 구도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됨.

- 4자회담은 동북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원칙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한반도 관련 문제를 남북한과 북·미의 두 협상채널로 이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4자가 한 테이블에 모여서 해결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관련 당사국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임.

- 결국 4자회동은 사안별 협상채널을 가동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합의사항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전성훈, 「한반도의 핵문제와 재래식 군비통제」 27-28쪽>

○ 4자회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4자가 회동하여 하나의 4자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됨.

- 현실적으로도 다양한 의제를 모두 4자 전체회담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도 하거니와, 한반도 평화에 관한 사안은 그 대부분이 남북한이 모두 일차적으로 직접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 사전에 의견조율을 위해 먼저 남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함.

- 말하자면 4자가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미국과 중국이 빠지는 「4-2」의 회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먼저 4자회담을 개최한 후 4자회담을 남북회담과 4자 전체회담으로 2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되도록 하여야 함.

- 회의 벽두에 일정기간 4자회담을 계속 개최하는 것은 북한을 회담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의 조치(이 과정에서 회담의제와 회담개최방식이 협의·결정될 것임)일 뿐이며,

- 일단 4자회담이 본궤도에 진입하면 실질적인 문제의 논의 단계에 들어가서는 사실상 「2+2」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회담을 개최해야 함.

○ 북한이 4자회담의 틀내에서 남북회담의 선 개최를 거부할

경우에는

- 남·북한간, 북·미간, 한·중간, 미·중간 등 국가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회담을 개최해 나가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이 때에는 각각의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는 4자 본회담(전체회담)에서 정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방식으로 회담을 운영할 때에는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같이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관여되어 있는 경우 3자회담 또는 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문제점」 119-120쪽>

○ 평화체제 구축은 주변국이 바라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관점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대전제는 모든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지만

- 실질적 내용과 과정에 관련한 그들의 입장은 나라마다 다르며 또 그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으리라고 판단됨.

○ 한국정부는 4자회담이라는 형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남북한 평화체제의 성격과 내용을 구체화시켜 주변국의 이해와 전폭적 지원을 얻어낼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평화협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한·미간에 남북 평화체제 구축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략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평화체제 문제는 정부의 4자회담 제의가

- 북한의 외교적 공세에 맞대응하는 선언적 차원을 벗어나

- 진정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현장으로 승화되고 그 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만 달성할 수 있음. <김광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69-170쪽>

○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인 내용이 논의될 4자회담은 그 회담이 성사되어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의 시간을 요함.

- 즉 4자회담이 성사되어 그 최종적인 결과를 거두기에는 그 개최를 위한 교섭 과정, 이에 뒤이은 예비회담, 그리고 본회담 등 상당 기간에 걸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임. <정해구, 「4자회담과 남북대화 전개 전망」 3쪽>

○ 당사자 원칙에 원칙적인 합의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대신 4자가 현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4자가 동등한 자격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고 4자간 평화협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곽태환, 「4자간 평화협정 : 한반도 평호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173쪽>

나. 의제

□ 예상되는 주요 의제와 그 대응책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①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 가장 중요한 의제로 대두될 것이며, 이 경우 북한측이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저지하고 기본합의서에 기초한 남북한 평화협정의 체결,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② 평화협정에 따른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축의 구체화

- 평화협정에 대한 기본입장이 정리되면 합의서에 준거한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축 협상은 기술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임.

③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축의 일환으로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 북한측이 노리는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적으로 저지되어야 하며, 두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하나는 남북한간 평화협정을 감시하기 위한 평화유지군으로 주한미군을 전환시킬 수 있으며,

- 다른 하나는 일본의 재무장, 중국의 패권적 팽창, 그리고 러시아의 세력확장 등을 이유로 주한미군의 잔류를 북한측에 설득,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임.

④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에 따른 남·북한 및 지역적 불안정을 관리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계의 구성

- 주한미군의 잔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며, 특히 일·중·러시아가 주한미군을 역내 stabilizer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잔류 전제하의 다자간 안보협력은 가능하며 북한측의 거부감도 크게 희석될 수 있음.

⑤ 평화협정 체결시 북한측에 대한 보상

- 이같은 보상은 북·미 그리고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활성화 및 가속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그 구체적 사례로는 무역금수의 해제/ 수출금지의 해제/ 최혜국 대우의 공여/ IMF 및 Word Bank로부터의 차관 공여/ 과학·기술의 협력/ 기타 직·간접적 경제원조가 있음.

⑥ 남·북한 평화공존 및 향후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의 제시 <문정인, 「미국 주도에 의한 3자회담 대두 가능성에 대비하는 문제」 208-210쪽>

○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실질적 평화의 구축이며, 특히 군사적 대결구조 완화 등과 같은 실질조치가 선행된 후에 정전협정의 대체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의 군사적 대결구조를 해소하고 남북한관계를 실질적인 평화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대체협상의 주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임. <이서항,「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회담 문제 검토」 5-6쪽>

○ 4자회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지 가장 중심적인 의제는 남북관계의 타결이어야 하며 이 회담이 의미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회담은 남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 <백진현,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쪽>

○ 4자회담 제안에서 명시하는 평화체제 관련 의제들은 추상성이 높은 개념으로, 현실에서 진행될 대화과정을 구속하기에는 매우 모호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모호성이 향후 4자회담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김도태, 「4자회담 제의 배경과 문제점」 7쪽>

○ 4자회담의 의제는 일응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제주선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가 될 것임.

- 그러나 구체적으로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함.

- 우리 정부는 적어도 4자회담 초기에는 「광범위한 긴장환화조치」라는 문구를 엄격히 해석하여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 즉 남북평화협정 체결 및 동 협정의 보장문제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바람직함.

- 다만 북·미간 및 한·중간 교차불가침협정(또는 선언) 체결문제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임.

-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의제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초래하게 되어 우리의 자주적 입지를 축소하게 됨.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문제점」 117-118쪽>

○ 주요한 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것임에 틀림없음.

- 즉 4자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양자간 혹은 다자간-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함.

- 북한의 식량난이나 대북경제원조 문제들은 4자틀 밖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4자회담에서 4자가 논의하여야 할 의제를 다음과 같이 6개항을 제시하고자 함.

○ 남북한 평화헌장을 의제로 채택할 수 있겠음.

-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북·미평화조약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4자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간에 평화협정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남한과 중국간의 평화합의서가 의제로 채택될 수 있겠음.

- 한국전 교전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 수립이 되

었지만 아직도 한국전쟁을 청산하는 문서가 없음.

○ 중국과 미국간의 평화합의서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음.

- 미국과 중국도 외교관계 수립이 되었지만 한국전쟁에 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청산이 없었음.

○ 남북한간의 정치·군사 신뢰구축방안(CBMs)이 의제로 채택될 수 있겠음.

- 불가침합의의 조항을 실천시키기 위하여 남북한 공동군사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하며, 공동군사위원회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관련된 사항, 공세전력 감축, 화생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보유 문제의 검증제도를 논의해야 할 것임.

○ 국제적 평화감시기구의 설치가 의제로 채택되어야 함.

- 4자회담에서 맺은 협정이나 합의사항을 실천·이행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갖는 평화관리기구로서의 국제감시단 운영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임. <곽태환, 「4자간 평화협정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170, 176-177쪽>

다. 기본합의서와의 연계

○ 4자회담 운영의 기본원칙을 기본합의서 이행 협의에서 출발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여야 함.

- 기본합의서는 남북한만이 당사자이므로 이 제의로 우리의 원칙준수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음. <이상우, 「'4자회담' 실현 접근

방안」 5쪽>

○ 4자회동의 구체적 목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틀이 된다는 합의를 얻어내는데 있음.

- 따라서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에 입각해 자주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적 보장을 4자회동의 첫 번째의 기본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임. <이장희, 「4자회담의 법제도적 과제와 추진방향」 18쪽>

○ 4자회담이 정전협정의 대체 문제와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정전협정과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재수용하는 한편

- 이 협정의 문제점과 합의서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김용호, 「4자회담 제의의 배경과 전망 및 과제」 82쪽>

라. 4자회담과 남북대화

○ 북한당국과의 비밀접촉 병행

- 4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북한당국과의 비밀접촉을 통해서 어떤 양해를 이루어야 할 것임.

- 다만 이러한 접촉을 권위있는 전문가가 합헌적 위임을 받

아 매우 신중하게 실시해야 함. <안병준, 「'4자회담' 예상쟁점과 대응방향」 3쪽(외교안보연구원 한반도 4자회담의 과제와 접근방향 세미나 '96.5.8)>

○ 모든 사안들을 4자회담과 연계시켜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가급적이면 북한과 다양한 논의의 통로가 확보되어 다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다른 부문에서의 논의가 평화체제 구축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

○ 민감한 문제들이 4자회담의 장에서 논의되는 것은 국내여론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비밀접촉통로가 개설되어 4자회담이 열리기 전이나, 열린 후에도 남북한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류길재,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 이론적 검토와 현실적 대응」 18-19쪽>

○ 만약 평양이 4자회담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남북대화의 재개에 직결된다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 북한은 특정한 결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4자회담이 지속되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응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이즈미 하지메, 「4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92쪽>

Ⅵ.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관련 쟁점사항

Ⅵ.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관련 쟁점사항

1. 평화협정 체결 형식

○ 평화조약을 일거에 체결할 것인가 또는 단계적으로 체결할 것인가에 관한 형식은 획일강화형과 단계강화형이 있는데, 어느 형식을 취할 것이냐는 평화조약의 교섭의 난이에 달린 문제임.

- 한국평화조약의 체결교섭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단 기본적 사항에 합의를 본 후에, 단계적으로 부수사항의 합의를 보기 위해 단계강화형인 "이집트·이스라엘형"을 채택해야 할 것임. <김명기, "한반도평화조약의 체결 -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127쪽>

○ 「2+2」방식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회담에서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추인하는 보장조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나,

- 남북회담 보다는 북·미회담을 선호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남북한·미·중의 4자회담을 주선하고 여기에서 남북평화협정과 미·중의 보장을 일괄타결하거나

- 불가피할 경우, 남북한·미·중이 당사자로 되는 평화협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미리부터 회담형식과 보장방안 유형을 확정하여 추진해서는 안될 것임.

- 회담형식의 경우, 융통성있게 운용한다는 원칙만을 갖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당해시점의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형식을 확정·추진하면 될 것임. <강원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보장문제」 30쪽>

○ 본 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전 당사국들의 4개 협정이 가능하게 됨.

- 즉 남북한협정, 북·미협정, 한·중협정, 미·중협정임.

○ 4개의 합의서는 가칭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안에 관한 공동선언」의 문서로 4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정상회담에서 동시에 서명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평화선언은 사실상 4자평화조약과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게 될 집단안보체제의 수립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 4자는 집단적으로 이 평화안을 보장하게 될 것임.

- 유엔안보리는 이 평화안을 보장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하여야 할 것임.

- 그 다음 단계는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하는 다자간안보협의체기구를 구성하는 것임. <곽태환, 「4자간 평화협정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177-178쪽>

2. 평화협정 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평화조약의 내용은 그 전쟁의 구조적 성격과 적대행위의 정치적 성격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로 구구각각으로 정해지며 통일적인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님.

○ 평화조약의 내용에는 "전쟁상태의 종료"와 "평화의 회복"에 관한 규정 이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해야 할 것임.

- 비무장지대의 설치와 국제적 감시

- 군비제한과 그의 국제적 통제

- 비핵지대화와 그의 국제적 보장

- 국제연합 한국문제특별위원회의 설치

- 특히 위의 사항들을 감시·통제·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적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김명기, 「한반도평화조약의 체결 -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31, 127쪽>

○ 전통적인 평화협정은 전쟁원인과 책임의 규명, 이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전범처리 내지 사면 등을 통해 전쟁을 완전히 종결하고 우호관계를 회복한다는 두가지 기능을 가짐.

○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인 평화협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적대관계 및 전쟁상태의 종결과 평화상태로의 회복

- 전쟁책임조항

- 정치적·영토관련 조항(상호불가침 및 무력행사의 포기, 경계선의 상호존중,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영토문제의 처리, 전범처리 등)

- 경제적·재정적 조항(전후 배상·보상문제, 전쟁발발 이전의 계약 내지 협정 이행문제 등)

- 보장조항(비무장의무 내지 지대 설치, 군비통제, 국제평화유지군 배치, 국제보장 등)

○ 한반도 현실을 감안할 때, 전쟁상태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또 남북한간에 전쟁책임이나 보상·배상문제를 다루거나 타결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장 당면한 문제는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 평화협정의 기본취지도 전쟁종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남북한 관계의 개선 내지 정상화라는 정치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 즉 평화협정은 과거의 처리문제보다는 향후의 평화정착과이를 위한 제도적·운용적 틀의 마련이 주요내용이 되어야 할 것임.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평화체제 정착방안 : 평화협정에 담겨져야 할 내용」 1쪽(통일정책실 세미나 '94.11.24)>

○ 평화협정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전쟁종료의 공식 선포
· 남북한관계 정상화
· 유엔헌장의 준수
· 관할지역 경계선 확정
· 남북한 불가침의 재확인
· 군사적 분쟁사항의 협의제도 및 절차
· 비무장지대 관리
· 유해송환 등 추가적인 종전처리
· 인도적 문제의 해결
· 교류와 협력
· 상주대표부 설치
·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성격 및 이행문제 <오관치, 「미·북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 13-14쪽>

○ 평화협정의 핵심내용은 남북한관계의 정상화를 포함해야 하나 관계 정상화 규정은 새롭게 명시하기 보다는 이미 남북한간에 채택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재수용하고 합의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기본합의서는 평화상태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은 다음 내용의 사항들을 포함해야 할 것임.

· 남북한 평화의지의 확인
· 평화관리기구 설치
· 경계선 문제

· 통행 및 통신문제 규정
· 통일조항(한반도 통일의 당사자 자주적 해결원칙 천명)
· 기본합의서 내용 수용
· 주변관련국의 한반도 평화협정 지지 요청
· 여타 관련사항(유엔사문제 포함) 등 <이서항(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대처방향」 12-13쪽(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5.7.21)>

□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적대적 군사행위의 완전중단과 군비축소

- 적대적인 군사행위를 완전중단함.

- 휴전선에 배치된 군사무력을 후방으로 철수함.

- 군병력이 통상 전체인구의 절반으로 설정됨으로 남북각각 은 30만으로 감축함.

- 동수감축이 아닌 절대감축을 실행함.

- 인원의 감축만이 아닌 군비의 상호균형과 절대감축을 실현함.

② 한반도에 비핵지대화를 실현함.

- 비핵화선언에 근거해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핵무기를 철거하고, 이를 확인함.

- 핵무기의 제조, 반입, 저장, 운반을 전면 금지함.

③ 국제연합군사령부는 해소되고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함.

-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현 유엔군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철수해야 함.

- 북한과의 적대행위가 만료되고 남북이 평화를 보장하는 군축을 실행하는 것에 따라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함.

-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는 남북이 군축하는 것에 비례해서 실시되며 완료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완성함.

- 한·미연합사는 남한의 군작전지휘권을 완전반환해야 함.

④ 특수한 남북관계규정과 통일의 보장이 담겨야 함.

- 교전단체였던 북한이 유엔에 이미 '91년에 가입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국가로서 인정됨.

- 남북은 합의서에 언명한대로 남북관계가 통일로 가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임을 인정함.

- 유엔과 미국(주변국)은 이를 지지함.

⑤ 남북상호간에 체결한 군사동맹은 자주적이고 평등하게 재편함.

- 한·미간 조·중간에 체결된 군사조약은 평화협정이 체결되

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것과 아울러 군사 자동개입조항 등을 변경함.

⑥ 위의 조항을 이행할 조직을 구성함.

- 평화협정체결의 당사국으로 평화위원회를 구성함.
- 위 평화위원회에서 위 조항을 이행함.
- 위 평화위원회는 평화협정체결이행을 강제할 권한을 가짐.
- 평화협정이 완전이행되는 시점에서 위 위원회는 해소함.
- 위 평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감시를 위한 중립국평화위원회를 구성함.

⑦ 기타

- 인도적인 조치로 '50년 전쟁당시의 포로송환과 미군유해의 완전송환을 확인함.
- 평화협정 이행임무를 위배하는 것에 대한 강제적 사법처리 조항을 설정함.

○ 전쟁전범자 처벌이나 영토의 문제 등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특수성상 소모적인 논란을 초래하여 평화협정체결 자체를 요원하게 할 수 있으므로 평화협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최규엽(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정책위원장),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 8-9쪽(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 국민토론회 '95.7.26)>

○ 새로운 협정의 명칭과 형식이 어떤 것이 되든 협정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군사분계선을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북한간의 경계선으로 함.
·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함.
·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든가 무력사용의 위협을 행사하지 않음.
·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음.
·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음.
·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음.
· 쌍방간의 대립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
· UN 헌장을 준수함.
· 남북간의 협정이 한국과 북한이 체결한 다른 나라들과의 조약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통일은 무력 아닌 평화적 민주적 방법으로 실현함.
· 남북간 협정에 대한 국제보장문제, 비무장지대에 평화감시군 주둔문제, 남북간의 군비경쟁중지와 군축문제, 한국정전협정의 대체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임. <전정환(국방대학원 교수),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전개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 7-8쪽(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 국민토론회 '95.7.26)>

○ 새로운 평화협정은 전쟁상태의 종식을 결과하는 정전협정 성격이 아니라 '미래의 주요 교전대상국간의 부전, 불가침을 선언하는 성격'을 강조

- 이러한 성격의 남북한 신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에 대한 국제적 보장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백승주,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1-2쪽>

○ 남북 평화협정의 내용은 이미 전쟁이 종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쟁책임이나 배상·보상 등 전쟁종결보다는 남북관계개선 및 통일지향이라는 평화회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 평화협정은 과거 처리문제보다는 향후의 평화정착과 이를 위한 제도적·운용적 틀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임.

○ 남북 평화협정은 남북간 기합의사항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성안되어야 하는 바, 기본합의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남북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남북 평화공존조항

  · 남북한간의 상호 실체인정을 전제로 전쟁상태의 종결과 평화공존관계로의 이행을 천명
  · 이와 관련,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주권, 국경, 내정불간섭 등의 국가승인의 의미를 갖는 용어 사용은 피함.

- 평화관리기구 설치조항

  · 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기구를 활용하는 등 정전협정체제하의 관리기구를 해체하고 새로이 형성되는 남북 평화체제를 관리할 기구를 명시

- 무력불행사 및 불가침조항

· 기본합의서의 불가침조항을 재확인하여, 무력행사 포기 및 상호 불가침을 규정
· 특히 무력의 개념에 테러, 파괴 및 전복행위 등을 포함시켜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설치

- 경계선조항

·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을 경계선으로 하되, 정전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서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현행 북방한계선을 현실화하는 방안과 중간선을 불가침경계선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함.

· 이와 관련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감안하여, 불가침경계선은 영토보존을 위한 국경선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위한 잠정적 성격의 것임을 명시

- 군사적 신뢰구축조항

· 무력불행사 및 불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쌍방이 군축문제를 성의있게 협의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함.
· 이를 위해 군사정보 교환, 부대 이동 및 기동훈련의 사전통보·참관, 현장검증과 상호 감시체제 교환 운영,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및 평화적 이용, 군사력 불균형 시정 및 군비축소 논의 등에 관한 신뢰구축 조치를 규정함.

- 한반도 비핵화조항

· 핵무기의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 금지의 비핵5원칙을 명시

- 국제적 보장조항

· 남북 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확보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분쟁의 평화적 해결조항

· 남북간 의견대립 및 분쟁 발생시, 일차적으로 남북간 직접협상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고 이차적으로 국제적 조정·중재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

- 기체결조약과의 관계조항

· 동서독 기본조약 제9조와 같이 남북 평화협정이 남북한이 각각 제3국과 체결한 기존 정치·군사조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을 설치함.

- 통일조항

·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 원칙을 천명하면서,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남북 평화협정이 남북한이 통일되기까지 남북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는 것임을 천명하도록 함.

- 한편 필요한 경우, 남북 평화협정과 기본합의서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도 마련하며, 유엔사 해체문제 등 기타 관련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명시함.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06-108쪽>

○ 대체협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 사항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임.

· 평화 의지의 확인
· 평화관리기구 설치
· 경계선 문제
· 통행 및 통신 문제
· 구체적 시한을 설정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 통일 조항(한반도 통일의 당사자 자주적 해결원칙 천명)
· 기본합의서의 내용 수용
· 여타 관련사항(유엔사 문제 등)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문제점」 21쪽(한국정치학회 광복50주년 기념 학술대회, '95.11.11)>

3. 평화 보장 및 관리기구 문제

○ 남북한 및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합의는 그 자체로 국제적 보장체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 뿐만 아니라 "국제적 보장"이라는 개념도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이해해서는 안됨.

- 한반도 평화란 궁극적으로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의 구축, 적절한 군사적 균형에 기반한 효과적 억지력, 군비감축 등에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국제보장체제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그러나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이해한 후에 4자합의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제고하기 위하여 유엔 등을 통한 4자합의 지지(support 또는 endorse)결의, 또는 여타 한국전 참전국의 지지결의 등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임. <백진현, 「현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문제」 54-55쪽>

○ 정전협정의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초보적 조건의 달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간에 본격적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구조적 군비통제의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임.

- 남북한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위한 협상을 통하여 남북한은 일정규모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쌍방 최고통수권자 및 국방당국자간 Hot-Line 설치, 남북 군사협상채널의 정례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그동안 상호제의 차원에 그쳤던 각종 방안들을 실제화할 수 있을 것이며,

- 이를 통하여 군비경쟁의 중지, 쌍방간 공격형 전략의 감축 및 후방배치, 대량살상무기 감축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구조적 군비통제 조치들을 논의·실천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협상이 결실을 맺게 되면 남북한간에는 일정한 군사적 투명성이 형성될 것이며, 이는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형과 상호억지력, 우발사태에 대비한 충분한 조기경보시간 등을 확보하여 줄 것임. <차영구, 「남북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군사적 방안」 6쪽>

o 두개의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오인에 의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남북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위기관리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여기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수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남북한간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미래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기를 통제해야 함.

- 이 통제소는 남북한간의 통신, 위태로운 오해에 대한 수정의 통로가 되어줄 것이며 교류와 협조를 위한 장소로도 사용될 것임. <김용제, 「미·북 관계개선 과정에 있어 북한의 공세적 평화협정주장, 봉쇄방안」 89쪽>

o 군비통제는 「선 신뢰구축, 후 군축」의 기존 방침을 견지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함.

o 군사적 신뢰구축은 기본합의서 제12조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가되 특히 군사적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둠.

- 첫째, 군사훈련의 상호 참관 및 통보를 의무화함.

- 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군사훈련을 제한하고 그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함.

- 셋째, 일정규모 이상의 부대 편성 및 배치, 군병력수, 주요 사령부 위치, 특정장비 등에 대한 군사정보를 교환함.

- 넷째, 시찰, 기념행사 참관, 교환방문, 견학 등 군인사 교류를 실시함.

- 다섯째, 비무장지대내 설치된 모든 군사시설·장비 및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동 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함.

○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군축을 추진하되,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군축협상을 진행함.

- 첫째, 기습공격 방지를 위한 공격형 무기를 우선 감축함.

- 둘째, 공격형 전력구조를 방어형 전력구조로 전환함.

- 셋째, 동수보유원칙에 따라 군사력을 상호 감축함(유사 군조직 및 예비전력 포함).

- 넷째, 군축을 감시·보장하는 검증체계를 확립함.

- 다섯째, 쌍방 군사력의 최종 유지수준은 통일후 적정 군사력 규모를 감안하여 협의·결정함.

○ 이와 함께 남북한·미·중 또는 남북한·미·일·중·러가 참가하는

다자간 안보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남북간 군비통제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19-121쪽>

○ 평화협정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감시·검증방법과 위반시 제재를 위한 합의가 포함되어야 함.

- 쌍방간 합의사항의 이행상태 감시를 위한 구체적인 감시·검증방법, 즉 자동탐지기 및 공중정찰과 같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검증방법의 사용은 실제적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의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위반시 제재 또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합의 및 실천이 평화정착을 가능케 함.

○ 주변 관련국, 특히 강대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장은 적대 쌍방간의 평화증진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강력한 의지가 결여된 중재는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음. <문성묵, 「평화협정개념과 주요사례 연구」 150쪽>

4. 유엔사 해체문제

○ 휴전협정 61항은 적대 쌍방 사령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협정의 수정과 증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UN군 사령관과 북한측 대표가 현재의 UNC기능을 승계할 새로운 대표기관에 합의하면 UNC는 해체될 수 있으며, 협정이행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구체적·기술적 방법으로는 UNC사령관과 북측 사령관이 이러한 취지의 추가의정서를 채택, 휴전협정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임.

- 또 구체적 대체기관은 양측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나 우리측의 입장은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한·미 대표기관보다는 한국군 단독의 대표기관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UNC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님을 주의해야 함.

-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남북한, 참전16개국 및 중국이며, UNC는 우리측을 대표하여 협정의 준수·집행을 책임지는 하나의 행정기관에 불과함.

- 따라서 휴전협정의 존속과 UNC의 해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임.

- 다만 UNC의 해체는 휴전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의 수정에 해당되므로, 이의 대체기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합의를 필요로 함.

○ 남북한의 UN가입으로 북한측이 제기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문제가 UNC해체이며, 또 북한이 UN의 정회원이 된 마당에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정치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점에서 UNC해체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라 하겠음.

○ 한국안보체제의 핵심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며, 이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UNC와 아무 상관이 없음.

- 따라서 UNC의 해체문제는 주한미군의 철수와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문제로 이의 연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UNC의 해체를 통해 우리의 안보체제 즉, 한·미 군사협력 관계를 명백히 하여, UNC와 주한미군과의 모호했던 관계를 이용한 북한의 UN군·주한미군 연계철수 주장에 쐐기를 박을 수도 있을 것임. <백진현, 「휴전협정체제의 대체에 관한 소고」 69-72쪽>

○ 북한의 위협이 소멸되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한국군 주도의 방위체제가 전쟁억지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감히 유엔군사령부는 해체 또는 철수시키고 정전협정체제를 남북한 기본합의서체제로 바꾸어야 함.

- 남북기본합의서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남북 불가침 조항"의 이행은 남한에서는 한국군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 시행기구로서 현재의 군사정전위원회 기능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수행하게 될 것임. <황원탁,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전협정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50쪽>

○ 추진전략 : 미-북 협상과정으로부터 주한미군 및 유엔사문제의 조기분리 및 주한미군문제와 유엔사문제의 분리

- 본 사안에 대한 우리의 목적은 문제를 현 상황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또 실천적 차원에서 완전하게 분리시켜 놓는 것이며,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사후대책 마련에 유리할 것임.

- 또한 논리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간의 문제로, 유엔사 문제는 유엔-북한간의 평화협정문제로 분리시켜,

- 한국전 당사자 문제를 매개로 한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 지속되어 온 북한의 공세적 논리를 돌파함으로써,

- 결과적으로 북한의 집중된 공세를 무산시키고, 우리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 문제의 해결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명분적,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순서일 것임. <이규열,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및 유엔사 문제」 38-39쪽>

○ 한반도의 평화보장장치로서 유엔에 의해 설치된 유엔사가 해체되게 되면,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적 공약이 소멸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 지금까지의 전쟁 억지력으로서의 기능과 유사시 한국방위에 대한 지원체제가 약화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

○ 남북한간의 안보상황을 직시하면서, 평화상태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진정한 평화보장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유엔사를 존속시키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와 같은 안보상황하에서는 유엔이라는 국제적 평화보장 장치가 한국안보의 일차적 방패막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국익상 유리하기 때문임. <김명진(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의 유엔사 해체주장 의도와 대비방향」 415, 417-418쪽(『국방강론』 3집6권 '94.10.1)>

○ UNC는 UN의 주요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아니고 UN안보리가 그 목적을 달성키 위해 설치한 보조기관에 불과함. 또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진 하나의 행정기관에 불과함.

- 보조기관이자 서명자에 불과한 UNC가 해체되어도 UNC가 대표하고 있는 조약당사자인 한국과 참전 16개국이라는 법인격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정전협정의 남측 일방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님.

- 그래서 UNC해체는 UNC를 승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남한측을 대표할 대체기관만 합의되면,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면서 개별적으로 처리 가능한 문제임. <이장희, 「한국 정전협정의 평화체제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17쪽>

○ 유엔군사령부의 유지는 만일의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발발시 유엔회원국의 참전을 권장하고 또 용이하게 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

- 유엔군사령부가 있음으로써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참전하는 모든 유엔회원국 군대는 유엔군으로서 참전하게 되고, 따라서 유엔의 지원을 얻게 됨.

- 만일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면 유사시 유엔회원국이 참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만일 유엔군으로서 참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게 되며, 적시에 이러한 결의가 가능할 것인지 불확실함.

○ 작전활동의 능률면에서도 유엔군사령부의 유지는 매우 중요함.

- 후방지원체제를 비롯한 유엔군 전투수행체제의 유지는 다양한 국가의 부대들을 통합지휘하여 전투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유엔군사령부의 유지는 곧 지휘체제의 편성, 후방지원체계의 구성, 작전계획의 수립, 정보지원체제 통합편성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제반 군사활동이 사전 준비되어 있음으로써 참전부대의 즉각적인 전투능력 발휘를 가능케 할 것임. <오관치, 「미·북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 11-12쪽>

○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서만 해체될 수 있음.

- 따라서 북한의 해체 주장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해체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유엔사 해체문제는 우리측이 충분한 정치적 재량과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음. <백진현, 「남북한 평화체제 전환대책」 54쪽>

○ 유엔군사령부 해체가 갖는 상징적 의미 외에는 군사적인 면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 이 때문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필요성이 제기됨.

□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름.

○ 첫째,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합의함.

- 즉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유엔군사령관의 임명국인 미국과 유엔군사령부가 주둔하는 한국의 입장이 충분하게 반영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되어야 함.

○ 둘째, 북한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측과의 회담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구체적인 대체기관에 대한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채택하여 정전협정에 첨부함.

- 이 같은 경우, 대체기관은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한·미연합사와 같은 한·미 대표기관보다는 한국군 단독의 대표기관이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군사정전위원회가 담당했던 기능을 흡수하도록 함.

○ 셋째,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하여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함.

- 이 경우,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하여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의는 남북한과 미국의 합의를 유엔 안보리가 추인하는 성격의

것이 될 것임.

- 다만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유엔 사무국은 유엔군사령부의 국제연합기 사용을 정지하고 유엔군사령부에 파견되어 있는 참전국 연락장교단을 철수하는 등 해체에 필요한 부수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 유엔군사령부 해체시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존속 및 주한미군사령부와의 관계조정이 문제로 제기됨.

-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주한미군의 유엔군사령부 보직 겸임을 해제하는 조치만 취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관한 교환각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요컨대 우리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 됨.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43-146쪽>

○ 유엔사 해체는 상징적 의미가 크며, 군사적 면에서 의미가 적음.

- 따라서 유엔사 해체문제는 대 북한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남북한 평화협정체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이장희,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13쪽>

5. 주한미군 문제

○ 북한이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만큼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는 남북대화에 유리한 작용을 하게 될 것임.

-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는 남한에게는 자주의지의 표현으로, 북한에게는 주한미군 철수주장의 부분적 만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김영재(청주대 교수), 「남북한의 평화체제 접근 추이 및 새로운 방안」 52쪽 (『통일문제 연구』 2권 4호 '90.12)>

○ 군사정전협정과 주한미군은 별개의 문제이며 전자는 남북간에 후자는 한·미간에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북한이 여전히 미군철수 및 대미 평화협정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기본합의서 제5조와 어긋나는 행위이며 19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이 "남북이 각기 외교 및 국방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말과도 배치되므로 이것은 단호히 억제해야 할 것임. <안병준, 「'남북기본합의서' 후의 남북한관계와 평화체제」 65쪽>

○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한국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장래는 오히려 한국의 의사가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과 묵시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큼.

- 즉, 북한은 자신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 반면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존재를 묵인받으려 할 것임.

- 북한이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그 존재를 용인받은 주한미군이 더 이상 대북억지력의 역할을 할 수 없음.

○ 한국정부는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관련한 대북협상에 있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를 고려한 신축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해야 함.

- 또한 한국은 평화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기 위해 전시작전권의 환수와 대미관계의 자주성 및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철기(동국대 교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남북한 군비감축방안」 35-36쪽(『통일한국』 '95.7)>

○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주둔하게 되었으며, 유엔군은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하여 파한되었는 바, 주한미군과 유엔군은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임.

- 따라서 양자를 연계시키려는 북한의 기도는 부당한 것임을 주장해야 할 것임.

- 특히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 억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유지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안정자(stabiliz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즉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는 단순히 남북한간의 평화체제 전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러한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도 실질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 후에나 가능할 것임.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47쪽>

○ 북한도 점차 한반도에서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미군병력의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됨. <이종석, 「4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과 전략 예상」 13쪽>

6. 불가침경계선 문제

○ 서해해상경계선을 획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 첫째, 일반해양법상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 북한이나 이를 전혀 다투지 않은 한국이나 모두 상대방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점과

- 둘째, 남북한의 법적관계는 원칙적으로 휴전협정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임.

- 그러므로 남북한간의 군사분계선을 획정하는 경우나 또는 다소 영속적 성격을 갖는 불가침 경계를 정함에 있어서도 대향국이나 인접국으로 간주하는 등거리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 북한은 서해의 군사경계수역 범위의 구체적 획선을 공시하지 않았고, 동해에서와 같은 논리에 선다면 중국과는 중간선, 황해도 연변에서는 북방한계선(북한해군의 지금까지의 경비구역선)을 경계로 보아야 할 것임.

○ 미국 국무성에서 작성한 지도들에서는 남북한간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이를 대향국간의 관계로 보고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여 놀랄만한 『가상적 경계선』을 제시하고 있음.

○ 해상불가침 경계선의 설정 원칙의 첫번째 기준은 남북한간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정함에 있어서 휴전협정의 정신에 따른 해상군사분계선이라고 간주되어야 할 서해의 북방한계선과 동해의 군사분계선 연장선이 되어야 함.

○ 두번째 기준은 휴전의 성립으로 쌍방간의 군사분계선을 정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하는 것으로 휴전이후 사실상 관할하여 온 관행을 참작해야 한다는 것임.

- 특히 서해에서는 1973년 『서해사태』이래 쌍방이 관한하여 온 수역의 경계가 북방한계선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적 변경을 추인하는 선에서 구체적 경계선을 정하여야 함. <김영구(해양대 교수), 「서해 해상불가침 경계선 설정방안」『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 180-181쪽 (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11)>

○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관련, 기본합의서 규정과 현상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먼저 북측에 대해 즉각 군사분계선 무단월선 및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 침범을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존중 및 무단 침범의 재발방지를 북측에 요구해야 함.

○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련, 우리측은 남북간에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기본합의서 제11조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제10조에 명시된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을 근거로,

- 서해에서는 정전협정체결 직후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북측도 1973년 서해5도 사건을 제외하면 특별한 문제없이 지난 40년간 유지되어 온 북방한계선(NLL)과 그 이남의 해상구역에 대한 우리측 관한을 계속 존중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해야 함.

- 동해에서는 군사분계선 연장선(내지 북방경계선) 및 그 이남의 해상구역에 대한 우리측 관할을 계속 존중해 줄 것

을 북측에 요구해야 할 것임. <이서항,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대처방향」 6-7쪽>

○ 남북한의 군사분계선인 휴전선을 남북경계선으로 그대로 명칭만 바꾼다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음.

- 또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만일 명칭만의 변경만이 아니라 내용상의 변경이라면 과연 우리가 현재보다 유리한 내용을 협상으로 얻어 낼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음. 피곤하고 비생산적인 교섭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육지나 섬의 인근수역은 그 육지나 섬에 속한 것으로 존중하라는 것이 1953년 휴전협정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북방한계선은 이러한 규정을 구체화한 경계선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에 위반하거나 전혀 근거없는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휴전협정 규정의 의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불분명한 구체적 내용을 분명하게 보완하였다고 해야 함.

-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UN군 사령부측의 통보를 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년간 준수한 사실임.

○ 북방한계선을 기초로 한국측이 관할하여온 서해 5개 도서군 수역은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 의하여 한국의 관할 수역으

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비록 부속합의서 10조에 의하여 해상경계선의 교섭 가능성을 열어 놓았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의 관할 수역이 그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음. <유병화, 「군사분계선에 대체할 남북경계선 설정의 법적 문제와 대책」 8, 26-27, 38쪽>

【 수록논문명 】

강원식(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보장문제」(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12.5)

곽태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4자간 평화협정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김정일의 북한'과 한국의 선택』(서울신문 국제포럼 '96.10.18)

금회연(서울시립대 교수), 「중국의 대 한반도 시각 변화와 4자회담」(『통일경제』 '96.8)

김경수(국방연구원 전략무기체제 연구실장),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주간국방논단』 614호 '95.12.26)

김계동(정치학 박사),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책동 관련, 군사적 도발 유형(시나리오)과 정전체제 관리문제」(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4.17)

김광열(배제대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민족통일연구원·충남대 국내학술대회 '96.9.13)

김구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한반도 평화체제 체결가능성과 한계」『미·북관계 속의 「평화협정」제기, 그 대처방안』(민주평통 전문가 정책포럼 '95.5.15)

김국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레짐과 한반도 안보」(『한반도 군비통제』, '95.10)

김덕중(관동대 교수, 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연계전략으로서의 '평화협정' 제기와 대응책」『미·북관계 속의 「평화협정」제기, 그 대처방안』(민주평통 전문가 정책포럼 '95.5.15)

김도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4자회담 제의 배경과 문제점」(극동문제연구소 제5차 통일전략포럼 '96.6.14)

김명기(명지대 교수), 「4.28 북한 외교부성명에 대한 분석·평가와 향후 대처방향」『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5)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협정의 체결」(『한반도 군비통제』 '95.10)

김명기, 『한반도평화조약의 체결 -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

하여』 92쪽(국제법출판사 '94.4.1)

김명기,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문제」(『북한』 '89.7)

김명진(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의 유엔사 해체주장 의도와 대비방향」(『국방강론』 3집6권 '94.10.1)

김영구(해양대 교수), 「서해 해상불가침 경계선 설정방안」『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11)

김영재(청주대 교수), 「남북한의 평화체제 접근 추이 및 새로운 방안」(『통일문제 연구』 2권 4호 '90.12)

김용제(미 퍼시픽스테이트대 총장), 「미·북 관계개선 과정에 있어 북한의 공세적 평화협정주장, 봉쇄방안」『미·북관계 속의 「평화협정」제기, 그 대처방안』(민주평통 전문가 정책포럼 '95.5.15)

김용호(외교안보연구원 교수), 「4자회담 제의의 배경과 전망 및 과제」『한반도와 동북아 4강관계』(외교안보연구원·경북대 세미나 '96.6)

김용호, 「최근 북한의 DMZ불인정선언과 대미잠정협정 체결 공세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안」(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4.8)

김창진(모스크바대 정치학 박사),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역할」『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전남대·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96.11.29)

남만권(국방연구원 군축전략연구실장),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향」(『주간국방논단』 623호 '96.2.26)

남만권,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의 접근방안」(『주간국방논단』 611호 '95.12.4)

노동일(경북대 교수), 「한반도 4자회담과 동북아 질서」『한반도와 동북아 4강관계』(외교안보연구원·경북대 세미나 '96.6)

류길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 이론적 검토와 현실적 대응」(고려대 평화연구소 세미나 '96.11.28)

문광건(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주장 관련, 정전체제 관리방안」(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5.2)

문성묵(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중령, 정치학 박사), 「주요 평화협정 사

례연구 및 한반도 상황에의 적용 가능성」(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3)

문성묵, 「평화협정개념과 주요사례 연구」(『한반도 군비통제』 '95.10)

문정인(연세대 교수), 「국제질서 개편과 남북관계의 재평가 - 전략적 공세주의를 위한 제언」(「통일경제」 '95.5)

문정인, 「미국 주도에 의한 3자회담 대두 가능성에 대비하는 문제」『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10)

민족통일연구원,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10)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5.9)

박영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 방향」(『통일경제』 '96.5)

박영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모색」(『통일』 '95.9)

박주현(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미·북간 평화체제 전환 논의와 관련한 군정위 위상변화 전망」『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8.23)

배한동(경북대 교수), 「미국과 일본의 대북수교 전망」『한반도와 동북아 4강관계』(외교안보연구원·경북대 세미나 '96.6)

백승주(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베트남 평화협정과 월남공산화 과정의 연계성 분석」(국방연구원 안보정세 평가회의 자료 '94.7.28)

백승주,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남북회담사무국 전문가 초청 워크샵 '95.8.18)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4자회담과 한국의 과제」(『정세와 정책』 2호 '96.5.25)

백진현,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외교안보연구원 한반도 4자회담의 과제와 접근방향 세미나 '96.5.8)

백진현,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문제점」(한국정치학회 광복50주년 기념 학술대회, '95.11.11)

백진현, 「남북한 평화체제 전환대책」『1995년도 군비통제 세미나』(제5회 군비통제 세미나, '95.8)

백진현, 「평화체제 정착방안 : 평화협정에 담겨져야 할 내용」 1쪽(통

일정책실 세미나 '94.11.24)

백진현,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통일전략포럼 보고서 96-2』(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96.4.12)

백진현, 「현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문제」『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10.7)

백진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 문제점과 대책」(『주요국제문제분석』 '94.10.19)

백진현, 「휴전협정체제의 대체에 관한 소고」(『통일문제 연구』 3권 4호 '91.12)

신상진(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6.27)

안병준(연세대 교수), 「'남북기본합의서' 후의 남북한관계와 평화체제」(『통일문제연구』 4권 1호 '92.3)

안병준, 「'4자회담' 예상쟁점과 대응방향」(외교안보연구원 한반도 4자회담의 과제와 접근방향 세미나 '96.5.8)

안병준, 「주변 4국과 남북한 : 동아시아 안정의 시험대」『북한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 한반도 정책』(민족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96.5.17)

안인해(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중미 관계를 통해 본 남북관계」(『통일경제』 '96.5)

오관치(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미·북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민주평통 토론회 '95.4.11)

오삼교(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4자회담과 한미의 대북 전략」(『통일경제』 '96.6)

유병화(고려대 교수), 「군사분계선에 대체할 남북경계선 설정의 법적 문제와 대책」(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5.9.6)

유병화, 「북한의 '평화보장체계' 수립 주장에 대한 분석·평가 및 향후 대처방향」『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5)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한의 대외 정책 변화와 전망」(『통일경제』 '96.5)

윤진표(성신여대 교수),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에 따른 군사분계선 관리 및 대응방안」(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5.5)

이규열(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및 유엔사 문제」『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9.30)

이동복(국회의원, 전 민족통일연구원 초청연구원),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상전략」『한국의 정전체제 유지와 평화체제 구축방안』(국방군사연구소 군사사 세미나, '95.10.10)

이삼성(한림대 교수),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도서출판 당대 '95.11.20)

이삼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하여」(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96 평화·통일 민족대토론회 '96.7.19)

이상우(서강대 교수), 「'4자회담' 실현 접근방안」 (외교안보연구원 한반도 4자회담의 과제와 접근방향 세미나 '96.5.8)

이서항(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대처방향」 (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5.7.21)

이서항,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정전체제의 전환과 APEC 및 UN 등 다무적 국제관계 활용 가능성 검토」『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10)

이서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회담 문제 검토」(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5.6)

이석수(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한반도 평화체제의 연계구조: 갈등관리의 다차원적 분석」『통일조국의 미래상』(충북대 '94 통일문제 학술회의 '94.6.8)

이영호(전 남북군사분과위 위원), 「4.28 북한 외교부성명에 대한 분석·평가와 향후 대처방향」『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5)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4자회담의 법제도적 과제와 추진방향」『4자회담의 과제와 추진방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통일문제 학술시민포럼 '96.6.5)

이장희,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국제문제조사연구소 '95연례정책토론회 '95.11.21)

이장희, 「한국 정전협정의 평화체제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제13회 통일문제 학술시민포럼 '94.11.8)

이장희,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 방안」(『통일』 '94.3)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4자회담과 향후 남북 관계」(『통일경제』 '96.5)
이종석, 「4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과 전략 예상」(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6.21)
이종석, 「북한의 5·3성명 관련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 주장에 대한 대처방안」(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5.5)
이철기(동국대 교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남북한 군비감축방안」(『통일한국』 '95.7)
이철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의 필요성」『통일전략포럼 보고서 96-2』(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96.4.12)
전동진(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적 평화보장 사례연구」(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1.12)
전성훈(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의 핵문제와 재래식 군비통제」『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민족통일연구원·충남대 국내학술대회 '96.9.13)
전정환(국방대학원 교수), 「4자회담 제의와 북한의 반응」『김정일체제하의 북한』(북한연구소 창립25주년기념 학술회의 '96.11.6)
전정환,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전개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 국민토론회 '95.7.26)
정영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10)
정종문(동아일보 논설실장), 「4자회담의 성공 전략」(『한국발전』 96 여름)
정해구(한신대 강사), 「4자회담과 남북대화 전개 전망」(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96.10.17)
제성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체제 전환 문제」(『북한』 '96.3)
제성호,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 전략 : 내용, 의도 및 문제점」『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95.6.21)>
제성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시 운영방안 - 군사정전위 무실화

와 관련하여」『정치·군사·핵분야 '94년도 전문가 위촉과제 종합』(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4.9.23)

제성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한국의 정전체제 유지와 평화체제 구축방안』(국방군사연구소 군사사 세미나 '95.10.10)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문제점」『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민족통일연구원·충남대 국내학술대회 '96.9.13)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및 보장 방안: 장단점 분석을 중심으로」(통일정책실 세미나 '94.11.24)

차영구(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남북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군사적 방안」『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3회 통일문제 학술시민포럼 '94.11.18)

최규엽(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정책위원장),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 국민토론회 '95.7.26)

최영관(전남대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 4자회담을 중심으로」『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전남대·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96.11.29)

한용섭(국방대학원 교수), 「미국의 4자회담에 관한 입장과 예상 전략」(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7.4)

한용섭, 「북한의 '잠정협정' 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남북회담사무국 위촉과제 '96.3)

한용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95.6.21)

한용섭,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통일정책실 세미나 '94.11.24)

홍규덕(숙명여대 교수, 전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전망과 대응책」(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3.9)

황원탁(전 군정위 수석대표),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전협정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3.6)

황원탁, 「현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대책」『한국의 정전체제 유지와 평화체제 구축방안』(국방군사연구소 군사사 세미나, '95.10.10)

더글라스 팔(Douglas Paal, 미 아태정책센터 이사장),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김정일의 북한'과 한국의 선택』 216-217쪽(서울신문 국제포럼 '96.10.18)

래리 닉시(Larry A. Niksch, 미의회 조사국 연구원), 「미·북관계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북한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 한반도정책』(민족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96.5.17)

마사오 오코노기(Masao Okonogi, 일본 게이오대 교수),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김정일의 북한'과 한국의 선택』 263-264쪽(서울신문 국제포럼 '96.10.18)

셀릭 해리슨(Selig Harrison, 카네기재단 연구원), 「미국의 대북정책과 4자회담」『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전남대·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96.11.29)

이즈미 하지메(Izumi Hajime,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4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0, 90쪽(전남대·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96.11.29)>

블라드미르 루킨(Vladmir Lukin, 러시아 하원 외무위원장),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양상」(서울신문 국제포럼 '96.10.18)

金景一 · 陣峰君**(북경대 교수)**, 「한반도통일에 대한 분석 및 중국의 정책에 대한 사고」『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전남대·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96.11.29)

夏道生**(Xia Daosheng, 중국 인민외교학회부회장)**,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정착을 위한 실현가능한 방안들」『'김정일의 북한'과 한국의 선택』(서울신문 국제포럼 '96.10.18)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현황과 쟁점

인 쇄 1996년 12월 일
발 행 1996년 12월 일
발행처 남북회담사무국
운 영 1 부
정 치 회 담 과
(전화 735-1261)
작성자 행정사무관 박형일
인쇄처 삼 신 인 쇄 (주)